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50호

2018. 2. 8.(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8-274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	---

◆ 고 시

제2018-29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4
제2018-3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14
제2018-35호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	
제2018-37호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4
제2018-38호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1

◆ 공 고

제2018-248호 감리업 등록 공고	70
제2018-249호 측량업 등록 공고	70
제2018-270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71
제2018-273호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매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71
제2018-27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일대학교)	90
제2018-27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91
제2018-29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92
제2018-29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93
제2018-300호 공인 등록 공고	94
제2018-301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94
제2018-303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94
제2018-306호 제9회‘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학생공모전 공고	97
제2018-313호 남산제1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09
제2018-314호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10
제2018-322호 2018년 서울시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계획 공고	110

◆ 구 고 시

제2018-15호 북촌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114
제2018-8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중구)	115

제2018-16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마포구)	122
제2018-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동작구)	123

◆ 구 공 고

제2018-10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구)	135
제2018-1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광진구)	138
제2018-143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재열람공고(광진구)	139
제2018-169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강북구)	140
제2018-18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봉구)	142
제2018-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142
제2018-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도봉구)	145
제2018-1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노원구) ...	147
제2018-1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영등포구)	149
제2018-2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영등포구)	152
제2018-2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남구)	159

◆ 사업소고시

제2018-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1
제2018-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1
제2018-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2
제2018-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2

◆ 사업소공고

제2018-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강서소방서)	163
-------------------------------------	-----

◆ 기 타

제2018-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4
제2018-3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4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4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를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 「희망두배 청년통장」 본인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8호)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2133-7373, FAX : 02)2133-0719
- E-mail : ckh2064@seoul.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9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2011.10.27)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2012.10.11)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2013.09.05.)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2015.6.25.)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호(2017.1.26.)로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나. 단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다. 구역면적 : 1,123,784㎡

라. 조성목적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마. 추진경위

- 2007.12.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
- 2008.12.30 실시계획 인가고시/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
- 2010.02.11 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
- 2010.09.30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
- 2011.09.22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
- 2011.10.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
- 2011.12.29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
- 2011.12.29 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
- 2012.10.11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
- 2012.10.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
- 2013.07.25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
- 2013.09.0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

- 2013.11.14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
- 2014.05.0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183호)
- 2014.07.0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14-247호)
- 2014.12.26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453호)
- 2015.05.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5-150호)
- 2015. 6. 2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
- 2016.7.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225호)
- 2016.12.29.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424호)
- 2017. 1. 26.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7-26호)
- 2017. 5. 4.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161호)
- 2017. 7. 27.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273호)
- 2017. 12. 14.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455호)

바. 입지여건

1) 교통여건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2km),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
- 대상지 내부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관통

2)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설명	확충계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 9,363톤/일 공업용수 : 2,949톤/일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전 력	1,276,196 MWh/년	한국전력
통 신	미 정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오수발생량 : 10,899톤/일 폐수발생량 : 2,323톤/일	서울특별시

※ 2012. 10. 11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기준임.

2. 관리기본방향

가. 관리목표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관리방향

- 동북아 관문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지이자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생태계로서 생산에서 소비, 기술개발에서 상품화의 전과정이 이루어지는 창조거점으로 육성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녹색도시의 모델로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녹색 도시 조성
- 연구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지원서비스 및 시범적인 생산기능, 주거 및 생활공간 기능이 연계된 자족적 공동체 조성

다.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배수펌프장 : 강서구
-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2)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기반시설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함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기정	1,110,805	729,785	81,326	211,459	76,469	11,766
변경	1,123,784	729,785	81,326	224,438	76,469	11,766

※ 관리제외면적 : (기정)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1개소), 보육시설(3개소)
(변경)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2개소), 보육시설(3개소)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집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라) 녹지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1) 입주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입주업종 >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업종별
공통	연구개발업	M	70	연구개발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IT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업종별
IT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BT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A	011	작물재배업
		C	10800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NT	나노소자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GT	그린생산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업종

2) 업종별 배분 비율

- 산업여건 및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업종배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 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업종별 배치계획

가)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렌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 입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

나)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 역세권 지역에 배치
- InT클러스터는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IT기술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클러스터 인근 배치
-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 지역에 배치
- GeT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
- BmT클러스터는 의료·제약 산업 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

다)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

라) 주변시설(업무시설, 의료시설, 자원회수시설, 주거시설 등)과 유치업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가) 입주계약 신청

-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

정에 의거하여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집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나) 심사

- 심사절차

위 원 회	⇒	시 장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협의 보완
토지공급협의대상자 선정		입주계약체결

- 위원회 평가 및 심사방법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 작성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전검토 및 의견 첨부 가능
- 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공급협의대상자를 선정

다) 계약체결

- 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용지공급조건(사업내용, 시기 등) 등에 대한 협의·보완을 거쳐 입주자 선정
-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지원시설구역 입주절차

- 당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 및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와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집법 제39조)

- 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혹은 공유지분)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SH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입주대상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관리기관이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마)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

바)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사)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 (산집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다)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련 법률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처분하려는 경우 및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3) 산업용지의 환수 (산집법 제41조)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적정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음

- 단,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 나)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
- 단,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4) 입주계약의 해지

-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분할 기준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입주계약의 해지 후의 재산처분 (산집법 제43조)

- 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가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음

6) 이행강제금 (산집법 제43조의3)

- 가)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나)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며, 이의 문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
- 다)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7) 연구개발환경의 보전

가)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강서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나)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 기반시설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8) 건축물 관리계획

가) 건축물 관리목적

- 건축물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개발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를 첨단R&D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건축물 조성을 유도함
- 기타사항은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 관리원칙

-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가 첨단기술R&D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에서 이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계 및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관리를 수행함
-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

해 공급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과정과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점검함. 다만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건축의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유비쿼터스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제2017-455호(2017. 12. 14)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곡산업단지 문화공원 2호 내 (가칭)코오롱 미술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마곡산업단지 내 문화공원 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공공기여에 의한 교양시설(가칭 코오롱 미술관) 건립
- 명 칭 : 마곡산업단지 문화공원 2호 내 (가칭) 코오롱 미술관 건립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용면적 : 문화공원 2호 8,298㎡ 내 (가칭)코오롱 미술관 영역 약 1,556㎡ / 연면적 1,866.969㎡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11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코오롱 컨소시엄 대표자 코오롱 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박동문 외 2개사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마. 사업기간 : '18. 4월 ~ '19. 5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호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6호(2002.07.02.)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2호(2015.09.17.)로 변경 결정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 결정(변경) 취지

- 양재역 일대 변화된 도시공간구조 및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선정 등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조정하고, 서초구청사와 양재환승주차장부지를 각각 특별계획구역 III, IV로 지정함.

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동 1366번지 일대, 양재동 12번지 일대	82,550	증)27,642	110,192	199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 경	-	서초동 1366번지 일대, 양재동 12번지 일대	110,192	• 양재역 일대 변화된 도시공간구조 및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선정 등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조정 (증 27,642㎡)

I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0,192	—	110,192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3,230	—	43,230	39.2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5,752	—	65,752	59.7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8	—	1,078	1.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32	—	132	0.1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남부순환로	중심지 미관지구	서초동 1366-18 ~ 서초동 1366-12	1,080	90	12	2002. 7.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6호)	지구단위 계획구간
기정	2	강남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서초동 1366-12 ~ 서초동 1362-4	2,640	220	12	1990. 11. 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0-373호)	지구단위 계획구간
기정	3	남부순환로	중심지 미관지구	양재동 12-9 ~ 양재동 11-27	2,640	220	12	2002. 7.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6호)	지구단위 계획구간
기정	4	강남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양재동 13-12 ~ 양재동 12-9	3,000	250	12	1990. 11. 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0-373호)	지구단위 계획구간
기정	5	강남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양재동 23 ~ 서초동 1376-3	2,281	199	12	1990.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0-373호)	지구단위 계획구간
기정	6	남부순환로	일반 미관지구	서초동 1376-3 ~ 서초동 1376-7	2,356	191	12	2003. 6. 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195호)	지구단위 계획구간

※ 용도지구의 면적, 연장,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9	40	주간선 도로	35,250 (478)	삼전동 (양재동 11-27)	방화동 (서초동 1366-18)	일반 도로	1971. 4. 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8호)	-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80	양재동 11-27	양재동 11-43	일반 도로	2008. 5.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6호)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80	양재동 11-23	양재동 11-37	일반 도로	2008. 5.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6호)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50	양재동 11-37	양재동 11-43	일반 도로	2008. 5.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6호)	-
기정	소로	3	1	4~6 (주요폭 원: 4m)	국지 도로	130	서초동 1362	서초동 1362-15	일반 도로	2002. 7.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6호)	-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20	서초동 1366-1 5	서초동 1366-15	보행자 전용도로	2002. 7.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6호)	-
기정	소로	3	5	4~6 (주요폭 원: 4m)	국지 도로	61	서초동 1405	서초동 1405	일반 도로	2011. 5.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18호)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85	서초동 산23-1	서초동 255-1	일반 도로	1988. 12.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22호)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50	양재역	서초동 257	일반 도로	1988. 12.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22호)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①	공공공지	양재동 11-21 일원	220.2	-	220.2	2008. 5.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6호)	-

(3)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주차장	양재동 23	7,972.7	-	7,972.7	1988. 11.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638호)	양재역 환승주차장

(4)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공공청사	-	서초동 1376-3	16,618.4	-	16,618.4	1988. 12.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22호)	서초구청

※ 공공청사 면적은 최초결정일 당시 고시면적(16,529.3㎡)을 현재의 필지면적으로 보정한 면적임.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계획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기 정	A ~ K	-
변 경	A ~ M	L(특별계획구역 III), M(특별계획구역 IV) 신설

■ 변경사유

가 구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면 적(㎡)			
L	16,618.4	특별계획구역 III	신 설	• 도시공간구조 변화 및 노후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
M	7,972.7	특별계획구역 IV	신 설	

(2) 최대개발규모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용도계획

가. 불허용도

■ 계획내용 (기정)

구 분		불 허 용 도	
		전 층 불 허	1 층 불 허
기 정	a 간선부 /가각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시설 및 항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세탁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b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및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의해 대지에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준수

※ 학교보건법 제 6조 ①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의 상대 및 절대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 이내 (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제외)

■ 계획내용 (변경)

구 분		불 허 용 도	
		전 층 불 허	1 층 불 허
변경	a 간선부 /가각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세탁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b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d 특별 계획 구역 III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세탁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장의사

- ※ 공동개발의 변경 등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 준수
- ※ 「학교보건법」 제 6조 ①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의 상대 및 절대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 이내 (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제외)

■ 변경사유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특별계획구역 III	• 불허용도 추가/조정	• 장래 광역환승기능 수용을 감안하여 간선부/가각부 불허용도(a) 중 여객자 동차터미널 제외

나. 권장용도

■ 계획내용 (기정)

구 분	전 총
1 (간선부/가각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 (이면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전총 권장용도의 경우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주차장 제외)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의해 대지에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

■ 계획내용 (변경)

구 분	전 총
1 (간선부/가각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 (이면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3 (특별계획구역 III)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전총 권장용도의 경우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주차장 제외)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의해 대지에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

■ 변경사유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특별계획구역 III	권장용도 추가 및 조정	•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R&D 전략 중심지 실현을 위해 간선부/가각부 권장용도(1) 중 R&D관련 용도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를 지정용도로 계획

다. 지정용도

■ 계획내용 (기정)

구 분	내 용
C (서초동 1362-26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전총)

■ 계획내용 (변경)

구 분	내 용
C (서초동 1362-26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전총)
E (특별계획구역 III)	• 일반업무시설 중 R&D 관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특별계획구역 III에 대한 지정용도의 면적 및 R&D관련 시설에 대한 인정여부는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변경사유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특별계획구역 III	지정용도 신설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R&D 전략 중심지 실현을 위해 R&D관련 용도(일반업무시설 중 R&D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를 지정용도로 계획

(2) 건축물 밀도계획

가. 건폐율계획

■ 계획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준용

구 분	제 어 지 칩	제 어 구 역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 III, IV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하여 결정

나. 용적률계획

■ 계획내용 (기정)

- 용도지역 변경전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지침 준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정한 밀도를 유지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노선상업지역)		600%	63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이하	800% 이하
	간선부 (서초동 1362-26)	300%	630% 이하	970% 이하 ^{주1)}
	이면부	300%	500% 이하	800% 이하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상한용적률

- 동일한 용도지역으로서 향후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기준/허용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간선부 및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간선부 및 이면부 용적률을 적용

■ 계획내용 (변경)

- 용도지역 변경전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지침 준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정한 밀도를 유지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노선상업지역)		600%	63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	630% 이하	800% 이하
	간선부 (서초동 1362-26)	300%	630% 이하	970% 이하 ^{주1)}
	이면부	300%	500% 이하	800% 이하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상한용적률

주2) 특별계획구역 III, IV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하여 결정

- 동일한 용도지역으로서 향후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기준/허용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간선부 및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간선부 및 이면부 용적률을 적용

- 용도용적제 (변경없음)
-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확보비율 기준 (변경없음)
- 상한용적률 (변경없음)

(3) 건축물 높이계획

■ 계획내용 (기정)

위 치	제어지침	비 고
가각부	80m 이하	
간선부	8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	

※ 공동개발의 변경 등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

※ 건축물 높이기준은 「건축법」 제51조에 의해 지정·공고된 '강남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을 적용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계획을 적용

■ 계획내용 (변경)

위 치	제어지침	비 고
가각부	80m 이하	
간선부	8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	

※ 공동개발의 변경 등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

※ 건축물 높이기준은 「건축법」 제51조에 의해 지정·공고된 '강남대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을 적용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계획을 적용

※ 특별계획구역 III, IV는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변경사유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특별계획구역 III, IV	• 특별계획구역 높이 추후 결정	• 추후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가 구	지 번		
1	A	서초동 1362대	용도	불허용도 : a(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A	서초동 1362-26대	용도	지정용도 : c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A	서초동 1362-7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A	서초동 1362-9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B	서초동 1362-14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B	서초동 1362-27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B	서초동 1362-10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B	서초동 1362-12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지번		
1	B	서초동 1362-13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B	서초동 1362-15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C	서초동 1366-4대, 1366-5대, 1366-6대, 1366-7대, 1366-8대, 1366-12대, 1366-13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58%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D	서초동 1366-15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D	서초동 1366-16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D	서초동 1366-17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D	서초동 1366-18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D	서초동 1366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지번		
1	D	서초동 1366-1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D	서초동 1366-2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D	서초동 1366-3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1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2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3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4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5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지번		
1	E	서초동 1363-6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7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8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10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11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서초동 1363-12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E (특별 계획 구역 II)	서초동 1363-13대, 1363-15대, 1363-16대, 1363-17대, 1363-18대, 1363-20도, 1363-21도	용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건폐율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용적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높이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F	서초동 1362-16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지번		
1	F	서초동 1362-17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F	서초동 1362-18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F	서초동 1362-19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F	서초동 1362-20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F	서초동 1362-21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F	서초동 1362-22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F	서초동 1362-23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G	양재동 12-9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G	양재동 12-10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지번		
1	G	양재동 12-11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G	양재동 12-3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G	양재동 12-4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G	양재동 12-7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H	양재동 13-1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H	양재동 13-4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H	양재동 13-5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H	양재동 13-7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H	양재동 13-8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지번		
1	H	양재동 13-18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H	양재동 13-19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H	양재동 13-20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H	양재동 13-21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I	양재동 11-1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I	양재동 11-2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I	양재동 11-3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I	양재동 11-13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I	양재동 11-117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지번		
1	I	양재동 11-4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I	양재동 11-5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I	양재동 11-6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I	양재동 11-7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I	양재동 11-8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I	양재동 11-11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I	양재동 11-12대	용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이	40m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지번			
1	I	양재동 11-93대		용 도	불허용도 : b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500% 이하
				높 이	40m 이하
	J	양재동 11-17대		용도	불허용도 : a (건축물 용도제한 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630% 이하
				높이	80m 이하
	K (특별 계획 구역 I)	양재동 11-21공, 11-23대, 11-24대, 11-25대, 11-26대, 11-27대, 11-29대, 11-30대, 11-31대, 11-32대, 11-33대, 11-34대, 11-35대, 11-36대, 11-37대, 11-38대, 11-39대, 11-40대, 11-41대, 11-42대, 11-43대, 11-94대, 11-88도		용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건폐율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용적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높이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L (특별계획 구역 III)	서초동 1376-3대	신설	용 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M (특별계획 구역 IV)	양재동 23차	신설	용 도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침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건폐율	
				용적률	
				높 이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배치에 관한 계획

■ 계획내용 (기정)

구 분	제어지침	제어구역	비 고
건축 한계선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도로변 및 간선가각부 : 폭 3m	-
	이면도로의 보/차도 확폭	- 이면도로변 : 폭 1m - 가구 C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단위를(가구전체) 이루었을 때 한하여 가구 서측 도로에서 폭 3m : 1m 차도, 2m 보도 - 특별계획구역II의 경우 북측 도로에서 폭 2m : 보도	

※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부의 보행활동 활성을 위한 보도부분의 확장 및 가로공원 조성, 이면부 차량서비스 지원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계획내용 (변경)

구 분	제어지침	제어구역	비 고
건축 한계선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및 간선가각부 : 폭 3~5m - 특별계획구역III의 경우 간선도로에서 폭 5m : 차도 및 보도	-
	이면도로의 보/차도 확폭	- 이면도로변 : 폭 1m - 가구 C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단위를(가구전체) 이루었을 때 한하여 가구 서측 도로에서 폭 3m : 1m 차도, 2m 보도 - 특별계획구역II의 경우 북측 도로에서 폭 2m : 보도 - 특별계획구역III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폭 3m : 보도	

※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부의 보행활동 활성을 위한 보도부분의 확장 및 가로공원 조성, 이면부 차량서비스 지원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변경사유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특별계획구역 III	건축한계선 신설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차도 및 보도 확보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계획내용 (기정)

구 분	적용대상	제어목표	제어지침
전면공지 (간선부)	• 간선도로변 미관지구 필지	• 간선도로변 보행/휴게공간 확보 • 공공부문과 일체형 유도	•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을 준용한 전면공지 확보 • 조경면적 산정시 전면공지면적 제외
전면공지 (이면부)	• 이면도로변 도로확폭 필지	• 이면도로 확폭으로 차량서비스 공간 확보	• 이면도로 보도/차도 확보
쌈지형 공지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 한 위치에 조성할 것을 권장	• 활용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 간선도로변에 면하여 선형으로 설치 • 공개공지로부터 3m 이상의 폭으로 설치 • 공개공지와 쌈지형공지 중복지정 불가
공개공지	• 역사인접 대규모 필지 (침 상형 권장) • 보행결절점	• 지하공간 보행활성화 유도 •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공급으로 보 행환경 개선	• 지하공개공지 확보로 역사에서 콘코스 연결 유도 •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유도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지침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서초동 1366-7외 6필지	• 공개공지 1개소 지정 (B=3m)	• 각각부
-	서초동 1366-7외 6필지	• 쌈지형공지 1개소 권장 (B=3m) 이 상	• 각각부
-	양재동 11-17	• 공개공지 1개소 지정 (B=3m)	• 남부순환로변
-	양재동 11-17	• 쌈지형공지 1개소 권장 (B=3m)이 상	• 남부순환로변
-	양재동 11-23외 22필지	• 공개공지 2개소 지정	• 남부순환로변, 보행결절점 (특별계획 구역 I)
-	서초동 1363-13외 6필지	• 공개공지 1개소 지정	• 보행결절점 (특별계획구역 II 결정시)

■ 계획내용 (변경)

구 분	적용대상	제어목표	제어지침
전면공지 (간선부)	• 간선도로변 미관지구 필지	• 간선도로변 보행/휴게공간 확보 • 공공부문과 일체형 유도	•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을 준용한 전면공지 확보 • 조경면적 산정시 전면공지면적 제외
전면공지 (이면부)	• 이면도로변 도로확폭 필지	• 이면도로 확폭으로 차량서비스 공간 확보	• 이면도로 보도/차도 확보
쌈지형 공지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 한 위치에 조성할 것을 권장	• 활용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하여 보행활동 활성화	• 간선도로변에 면하여 선형으로 설치 • 공개공지로부터 3m 이상의 폭으로 설치 • 공개공지와 쌈지형공지 중복지정 불가
공개공지	• 역사인접 대규모 필지 (침 상형 권장) • 보행결절점	• 지하공간 보행활성화 유도 •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공급으로 보 행환경 개선	• 지하공개공지 확보로 역사에서 콘코스 연결 유도 •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유도
침상형공지 (신설)	• 지하철 및 지하보도와 직접 연계 가능 필지	• 지하철과 연계한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해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접근 유도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지침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서초동 1366-7외 6필지	• 공개공지 1개소 지정 (B=3m)	• 각각부
-	서초동 1366-7외 6필지	• 쌈지형공지 1개소 권장 (B=3m) 이상	• 각각부
-	양재동 11-17	• 공개공지 1개소 지정 (B=3m)	• 남부순환로변
-	양재동 11-17	• 쌈지형공지 1개소 권장 (B=3m)이상	• 남부순환로변
-	양재동 11-23외 22필지	• 공개공지 2개소 지정	• 남부순환로변, 보행결절점 (특별계획 구역 I)
-	서초동 1363-13외 6필지	• 공개공지 1개소 지정	• 보행결절점 (특별계획구역 II 결정시)
-	서초동 1376-3	• 침상형공지 1개소 권장	• 지하철 및 지하보도와 직접 연계 (특 별계획구역 III)

■ 변경사유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특별계획구역 III	• 침상형 공지 신설	• 양재역과 연계하여 보행휴게공간 확보

(4) 경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5)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계획내용 (기정)

구 분	위 치	적용기준	비 고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	• 서초동 1362-13	•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기부채납으 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이면도로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도로변	• 간선도로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하여 각 획지로의 직접 진출입을 제한	남부순환로 강남대로
일방통행구간	• 이면도로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시행	이면도로
보행전용도로	• 간선도로변에 접속되는 소로	• 차량진출입 금지 •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	남부순환로변
공동주차 출입구	• 양재동 13-7, 13-8 • 서초동 1366-16, 1366-17	• 연접한 대지간 공동주차출입구를 설치하여 간선도로 차량진출입구의 최소화	강남대로변 남부순환로변
주차출입구	• 양재동 13-11	•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면부 차량진출입 이 불가한 대지에 한하여 간선도로변에 차량출입구 지정	강남대로변
도시기반시설	• 양재동 11-23외 22필지	• 이면도로 정비와 개발규모에 따른 적정 폭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확폭	특별계획구역 I
	• 양재동 11-23외 22필지	• 단일 획지로 공동개발시 기부채납으로 가각부에 공공 공지를 조성 (기존 도시계획시설 면적제외)	특별계획구역 I
	• 서초동 1363-13외 6필지	• 이면도로 정비와 개발규모에 따른 적정 폭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확폭 (일부 4m→ 6m 확폭)	특별계획구역 II 결정시

■ 계획내용 (변경)

구 분	위 치	적용기준	비 고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	• 서초동 1362-13	•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기부채납으 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이면도로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도로변	• 간선도로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하여 각 획지로의 직접 진출입을 제한	남부순환로 강남대로
일방통행구간	• 이면도로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시행	이면도로
보행전용도로	• 간선도로변에 접속되는 소로	• 차량진출입 금지 •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	남부순환로변
공동주차 출입구	• 양재동 13-7, 13-8 • 서초동 1366-16, 1366-17	• 연결한 대지간 공동주차출입구를 설치하여 간선도로 차량진출입구의 최소화	강남대로변 남부순환로변
주차출입구	• 양재동 13-11	•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면부 차량진출입 이 불가한 대지에 한하여 간선도로변에 차량출입구 지정	강남대로변
도시기반시설	• 양재동 11-23외 22필지	• 이면도로 정비와 개발규모에 따른 적정 폭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확폭	특별계획구역 I
	• 양재동 11-23외 22필지	• 단일 획지로 공동개발시 기부채납으로 가각부에 공공 공지를 조성 (기존 도시계획시설 면적제외)	특별계획구역 I
	• 서초동 1363-13외 6필지	• 이면도로 정비와 개발규모에 따른 적정 폭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확폭 (일부 4m→ 6m 확폭)	특별계획구역 II 결정시

※ 금회 편입구역 차량출입금지구간 추가지정

4.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없음)

※ 인센티브 운영계획 : 특별계획구역Ⅲ, Ⅳ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IV.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310.8	증)24,591.1	30,901.9		—
기정	I	양재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I	양재동 11-23 일대	4,472.6	—	4,472.6	2008. 5.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6호)	—
기정	II	양재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II	서초동 1363-13 일대	1,838.2	—	1,838.2	2011. 5.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18호)	—
신설	III	양재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III	서초동 1376-3	—	증)16,618.4	16,618.4	—	—
신설	IV	양재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IV	양재동 23	—	증)7,972.7	7,972.7	—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III	서초동 1376-3	16,618.4	• 양재역 일대 변화된 도시공간구조 및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대상 선정 등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
신설	IV	양재동 23	7,972.7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변경)

(1) 특별계획구역 I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II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 III (신설)

■ 특별계획구역Ⅲ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명 칭		• 특별계획구역Ⅲ		
면 적		• 16,618.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일반상업지역 변경 검토)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d		
	권장용도	• 권장용도 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지정용도	• 지정용도 E - 일반업무시설 중 R&D 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 폐 율		•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준용 ※ 고층부 건폐율 40%이하(탑상형 건축물)		
용 적 률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높 이		• 향후 구체적 건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시설이용객의 보행공간 확보 및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대지내 공지	침상형 공지	• 지하철과 연계하여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1개소 설치 권장 - 침상형공지와 지하철 연결 콘크스 확보		
교통처리	차량출입금지구간	• 간선도로변 및 일부 이면도로변에 지정		
공공성 확보		구 분	주 요 내 용	규모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 공공청사 :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 관련법규 및 기준에 따른 면적 준수 • 부대·편익시설 : 어린이집, 도서관등 ※ 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2항에 따른 편익시설에 한함	기정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내 250%
		공공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환승센터 등 ※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증가 용적률의 50%이상
		전략용도	•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센터 등 ※ 전략용도는 공공성 확보 및 정책적 목표 달성 등을 위해 도입·설치하는 시설 ※ 용적률 총량의 10%이상 의무 설치	

운영기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 및 전략용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하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양재R&CD 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 결과에 따라 '광역환승기능 및 개선대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적극적인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주차장 축소를 검토한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은 세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필요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 • 지정용도의 면적 및 일반업무시설 중 R&D관련 시설에 대한 인정여부는 추후 세부개발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 전략용도는 위원회에서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용적률 미달량에 대하여 대체 적용이 가능하다.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하에 조성되는 '공공 및 전략용도'가 공공성 확보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확보가능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 및 전략용도'로 도입하여야한다. • 공공임대주택 도입시 시 정책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및 적정규모 등을 검토한다.
------	---

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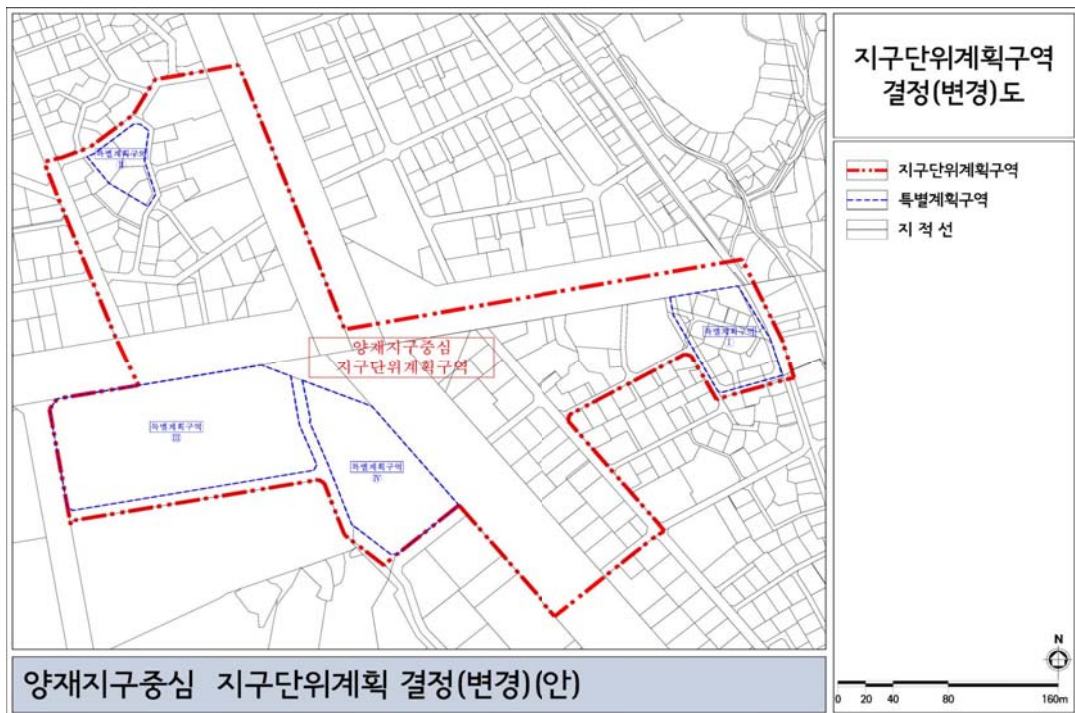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1)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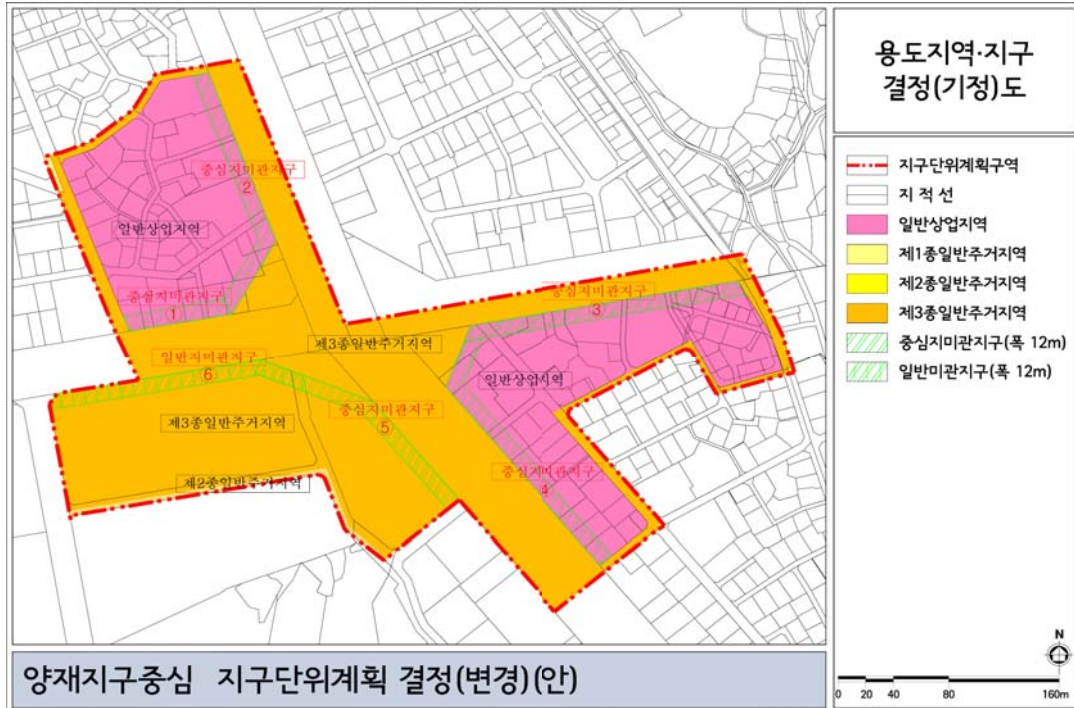
<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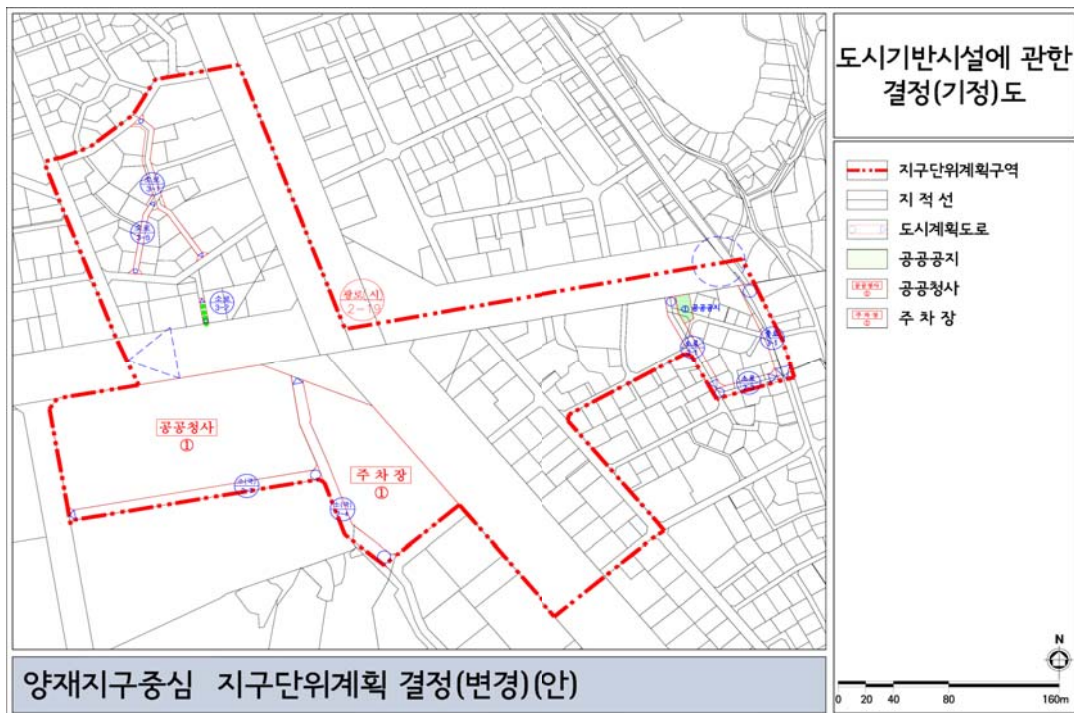
<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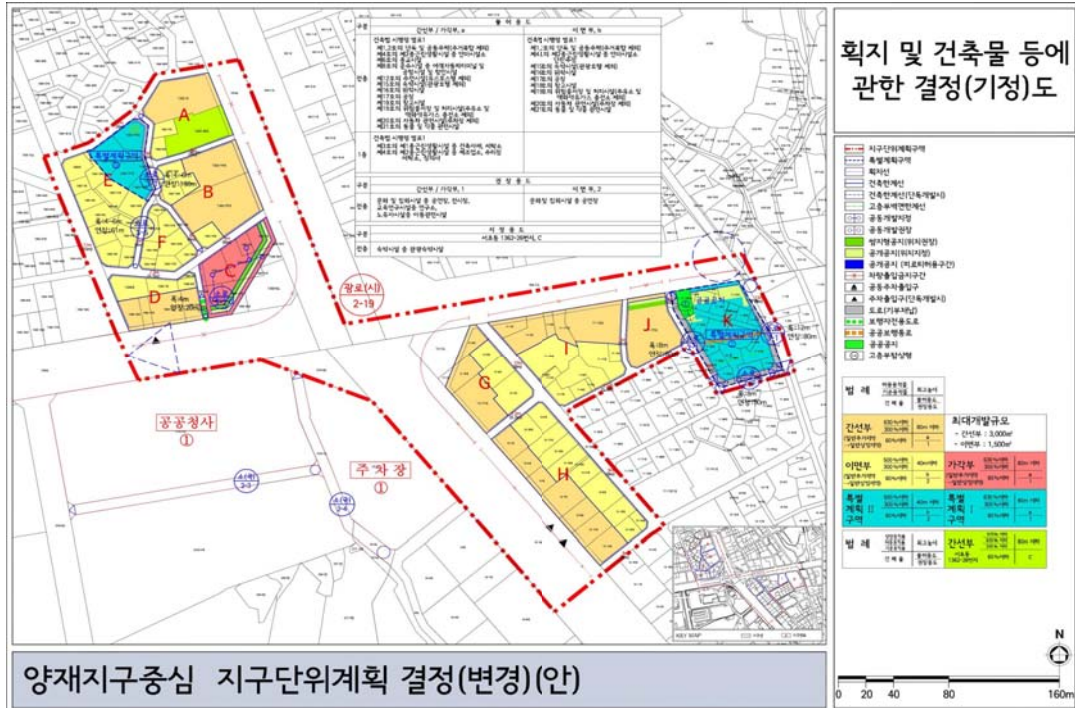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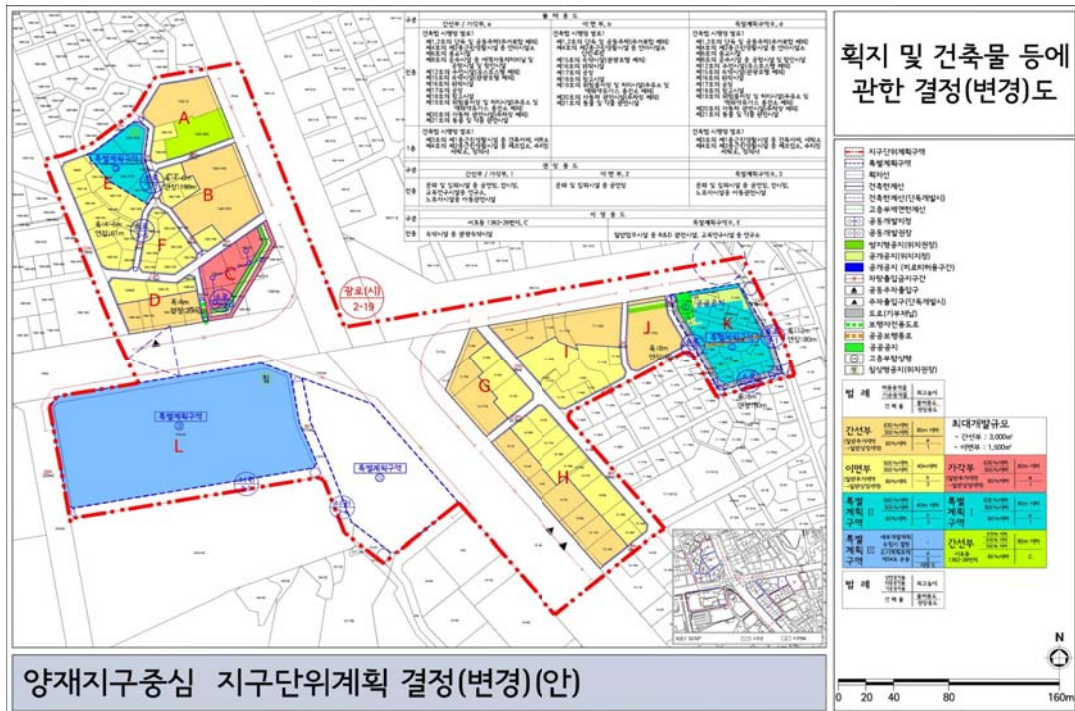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7호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1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4호(2012.7.26)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C	7	불광동	238	11.8	190%	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C	7	불광동	238	11.8	210%	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 계획용적률은 기 결정(서고 제2012-204호, 2012.7.26)시 210%로 상향된 사항임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불광제5 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불광제5 주택재개발사업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117,919	-	117,919	

3. 정비계획의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합계	117,919	-	117,919	100.0	정비기반시설 조정에 따른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15,705	감)6,256	9,449	8.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3,386	3,386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452	증)3,310	104,762	88.8	
	제3종일반주거지역	762	감) 440	322	0.3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7,919	-	117,919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23,969	감)5,641	18,328	15.4	
	도 로		6,928	감) 299	6,629	5.5	
	공 원 및 녹 지	소계	10,429	감)1,529	8,900	7.5	
		공원1	6,278	감)1,118	5,160	4.4	어린이공원
		공원2	2,720	-	2,720	2.3	어린이공원
		공원3	660	-	660	0.5	근린공원
		공원4	360	-	360	0.3	근린공원
		녹지1	186	감) 186	-	-	경관녹지
		녹지2	225	감) 225	-	-	경관녹지
		공공청사	-	증)2,799	2,799	2.4	공공청사 (등청사+청(소)년 복합시설)
	학 교		6,612	감)6,612	-	-	중학교
획지	소 계		93,950	증)5,641	99,591	84.6	
	획 지1		90,001	증)5,230	95,231	80.8	공동주택
	획 지2		1,851	-	1,851	1.6	종교시설(교회)
	획 지3		2,098	-	2,098	1.8	종교시설(교회)
	획 지4		-	증) 186	186	0.2	근린생활시설
	획 지5		-	증) 225	225	0.2	근린생활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1	20~23	보조 간선	일반 도로	1,820 (403)	불광동 276-25	불광동 239-52		'66.06.21 건고 제2493호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5	불광동 239-15	불광동 221-59		'08.12.18 서고 제2008-468호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0	불광동 221-59	불광동 230-13		'08.12.18 서고 제2008-468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5	불광동 242-20	불광동 276-4		'76.07.27 서고 175호	
변경	소로	2	3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5	불광동 242-20	불광동 276-4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7	불광동 221-23	불광동 220-1		'90.10.24 서고	73m 부분폐지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7	불광동 274-19	불광동 276-29		'01.06.25 서고2001-175호	일부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①	6~16.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77	불광동 264-38	불광동 244-184		'12.07.26 서고2012-204호	
변경	소로	3	①	6~16.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6	불광동 264-38	불광동 259-65			

※()는 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3	소로 2-3	확폭 (8m → 10m)	- 불광초교 통학로 및 공공청사 인접 도로의 보차분리를 위한 도로 확폭
소로 3-①	소로 3-①	연장축소 (277m → 206m)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효율성이 부족한 구간의 연장 축소

2) 공간시설(변경)

(1) 공원·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어린이공원	불광동 230-20번지 일대	6,278	감)1,118	5,160	'08.12.18 서고 제2008-468호	
변경	②	공원	어린이공원	불광동 272-20번지 일대	2,720	-	2,720	'08.12.18 서고 제2008-468호	위치정정
기정	③	공원	근린공원	불광동 산54-5번지 일대	130,705 (1,020)	-	130,705 (1,020)	'77.07.14 건고 제138호	불광 근린공원
폐지	①	녹지	경관녹지	불광동 238-13번지 일대	186	감)186	-	'08.12.18 서고 제2008-468호	
폐지	②	녹지	경관녹지	불광동 238-2번지 일대	225	감)225	-	'08.12.18 서고 제2008-468호	

■ 공원·녹지(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공원	- 위치변경 272-21번지 → 230-20번지 - 면적변경 : 감_1,118㎡	- 학교시설 폐지에 따른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②	어린이공원	- 위치정정 238-23번지 → 272-20번지	- 종전 고시 오기 정정
①	경관녹지	- 폐지	- 부정형 자투리공간의 효율성이 미흡한 시설 폐지
②	경관녹지	- 폐지	- 부정형 자투리공간의 효율성이 미흡한 시설 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불광동 242-5번지 일대	-	증)2,799	2,799	-	동청사+ 청(소)년복합시설 (은평구청)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신설 (2,799㎡)	- 정비구역 내 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시설 을 도입하기 위해 공공청사 신설

(2)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중학교	불광동230-21번지 일대	6,612	감)6,612	-	'08.12.18 서고 제2008-468호	시설폐지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중학교	시설 폐지	- 서부1학군 내 여건 변화(학생수 감소, 중학교2개소 신설)로 추가적인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학교(중학교)시설 폐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소계		5,384.55	증) 1,852.35	7,245.5	6,582.5㎡ 이상
	경로당	획지1	251.10	증) 298.90	550.00	500㎡ 이상
	어린이집	획지1	205.92	증) 591.58	797.50	725㎡ 이상
	작은도서관	획지1	-	증) 327.80	327.80	298㎡ 이상
	어린이놀이터	획지1	2,533.00	증) 74.68	2,606.20	
	주민운동시설	획지1	1,724.63	증) 581.59	2,305.33	
	입주자집회소	획지1	669.90	감) 10.98	658.67	
관리사무소 / 경비실		획지1	130.98	증) 90.73	221.65	126.8㎡이상
휴게시설		획지1	5개소 이상 설치	증) 2개소	7개소 이상 설치	
근린생활시설		획지1	1,600.0	증) 290.00	1,890.00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등)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7,919	-	-	불광동 238번지 일대	546	-	-	546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불광5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17,919	획지1	기정	90,001	불광동 24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6 이하	평균 18층이하 (71m이하)	제2종 일반
				변경	95,231	불광동 24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6 이하	평균 18층이하 (71m이하)	
			획지2	기정	1,851	불광동 242-101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190 이하	12층이하	제2종 일반
				획지3	기정	2,098	불광동 264-4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190 이하	
			획지4	신설	186	불광동 238-13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제1종 일반
				획지5	신설	225	불광동 238-2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190 이하	
			학교	기정	6,612	불광동 230-18번지 일대	학교시설	6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
				변경	시설폐지						
■ 주택공급계획 : 2,232세대 → 2,383세대 (증 151세대) ■ 건립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건립규모		기준		세대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232세대 (100.0%)		증) 151	2,383세대 (100.0%)
								85㎡이하		총 건립 세대수 80%이상	1,341세대 (60.08%)
				60㎡초과 ~85㎡이하		674세대 (30.20%)	증) 215	889세대 (37.31%)			
				85㎡초과		총 건립 세대수 20%미만	217세대 (9.72%)	감) 107	110세대 (4.62%)		
■ 임대주택 건설비용 : 388세대(17.38%) → 372세대 (15.60%) (감 16세대)											
				구분		세대수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8세대 (100.00%)		감) 16	372세대 (100.00%)		
				40㎡이하		180세대 (46.39%)		감) 15	165세대 (44.35%)		
				40㎡초과~50㎡이하		156세대 (40.21%)		감) 41	115세대 (30.91%)		
				50㎡초과~60㎡이하		52세대 (13.40%)		증) 40	92세대 (24.73%)		
※ 임대주택 건설기준 변경 : 총 세대수의 17% 이상 → 15% 이상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기정	■ 평균18층 이하 적용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8조제1항에 의함)									
	변경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없음)									
공공보행통로		■ 획지1 : 불광로에서 공원3(불광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폭원 6m의 항시 개방된 형태로 조성									

3)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종교)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 환산부지 면적
			순부담 적용	순부담 제외			
		117,919㎡	99,591㎡	16,558㎡	1,770㎡	2,070.6㎡	8,270.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신설 기반시설 면적 + 공공시설 설치 환산부지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6,558㎡ + 3,097.9㎡ - 2,070.6㎡ - 8,270.6㎡ = 9,314.7㎡ (종상향 면적대비 10.56%, 구역면적 대비 7.9%)						
공공시설(건축물) 설치 환산부지 면적	•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 X 연면적) ÷ 부지가액 = (2,267,000원 X 8,310.96㎡) ÷ 6,081,718원 = 3,097.9㎡						
계획(기준)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10% 적용						
개발가능 용 적 륜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0965) = 236.34% 이하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314.7㎡ / (99,591㎡ - 3,097.9㎡) = 0.0965 • 정비계획 용적률 : 236%이하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 이내	불광 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 1,861세대 계획 : 2,232세대 (증) 371세대	이상없음	-
변경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 이내	불광 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 1,861세대 계획 : 2,383세대 (증) 522세대	이상없음	-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토질의 종류에 따라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기존주택지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평탄화 및 절·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강풍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환경오염	●구역내 직접적인 환경오염 요인은 없으나 공사시 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오염원을 찾아 저감대책 마련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연면적)
기정	불광동 242-48번지 일대	-	3	388 (전체 세대수의 17.38%)	34.90㎡:180세대 44.06㎡:156세대 50.86㎡: 52세대	21,589.73㎡
변경	불광동 242-48번지 일대	-	3	372 (전체 세대수의 15.60%)	39.20㎡:165세대 44.06㎡:115세대 50.86㎡: 92세대	21,647.48㎡

4. 관계도면 : 불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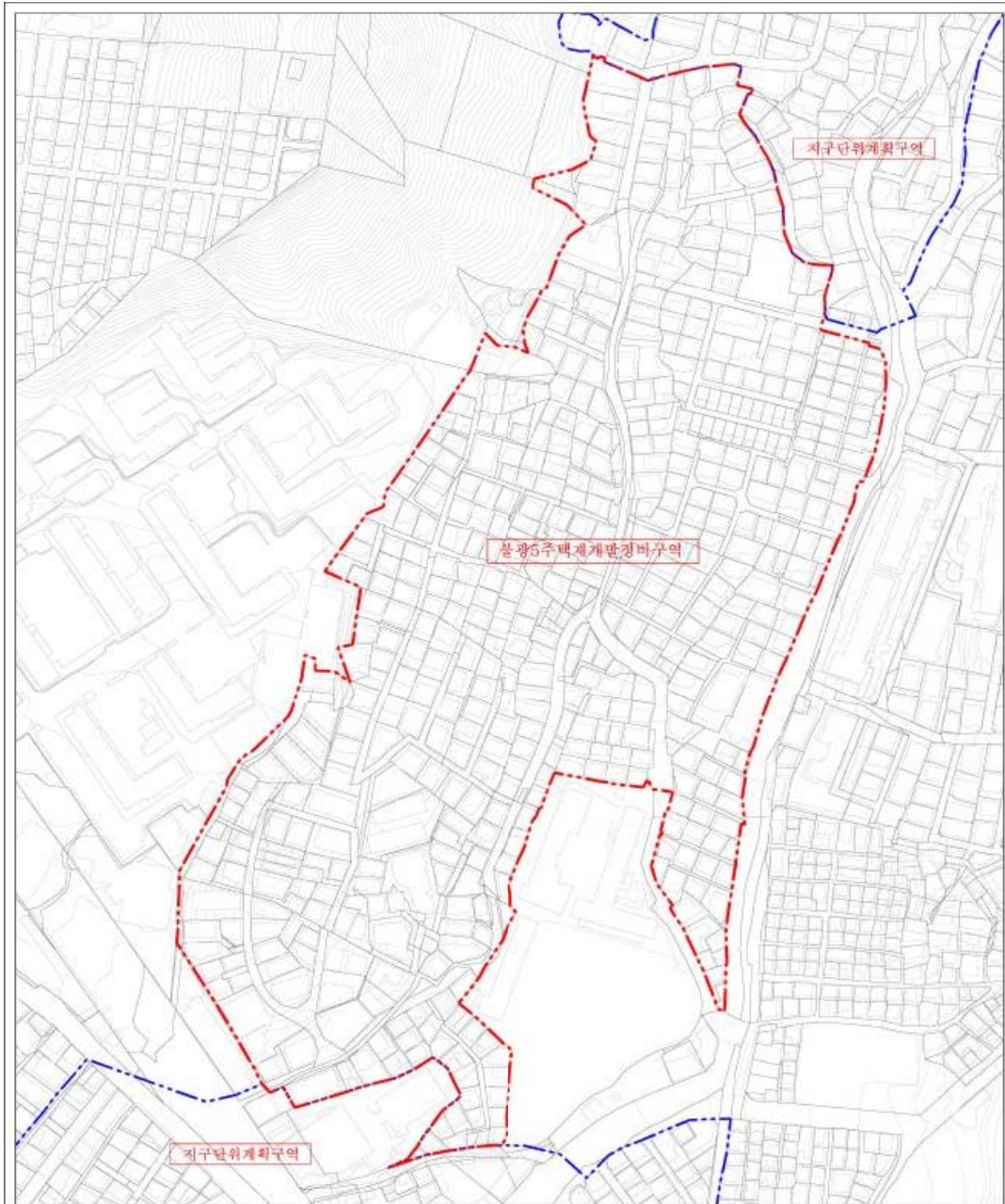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02-2133-7189) 및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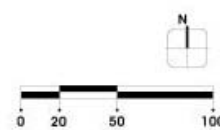


은평구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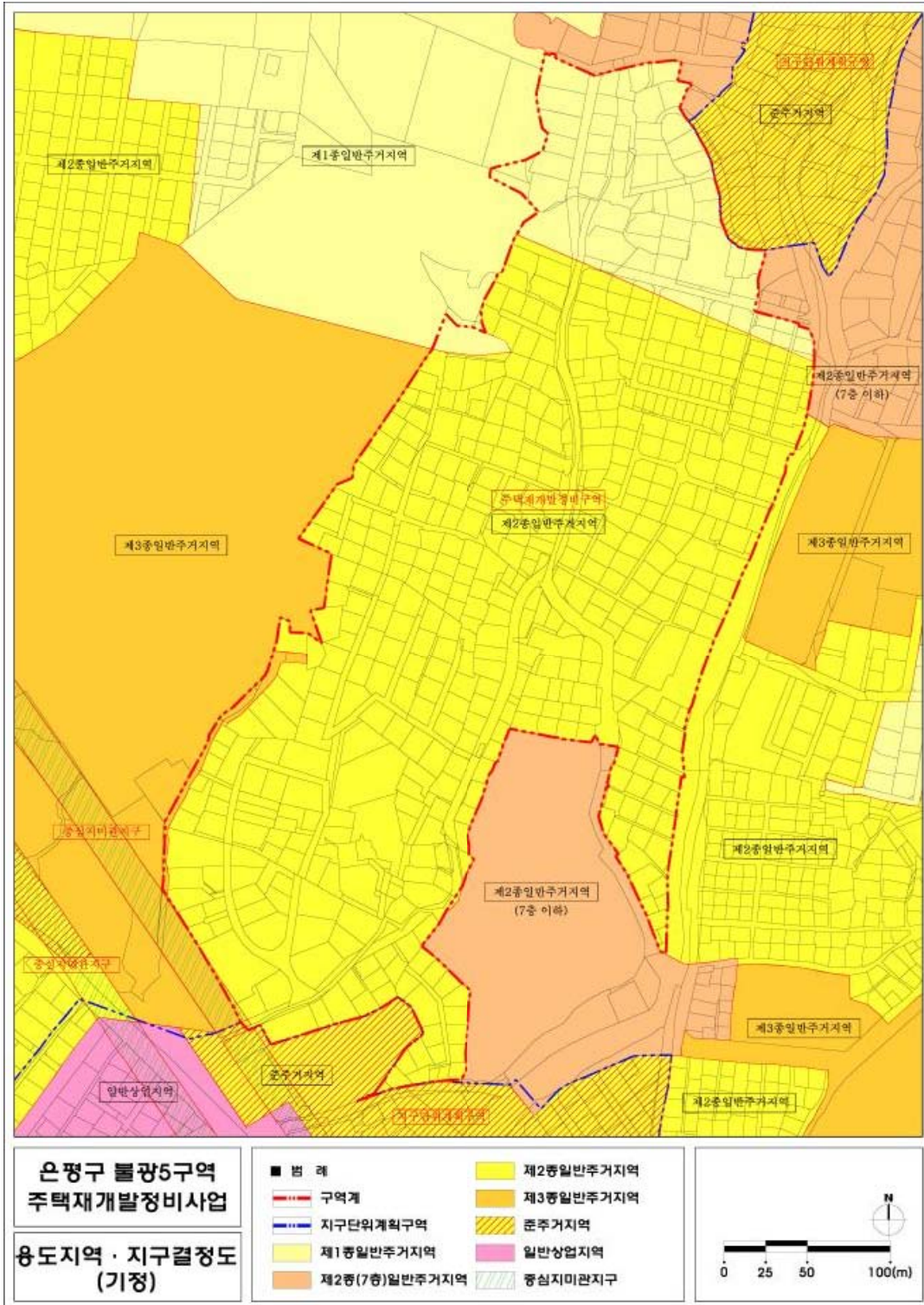
정비구역결정도
(변경없음)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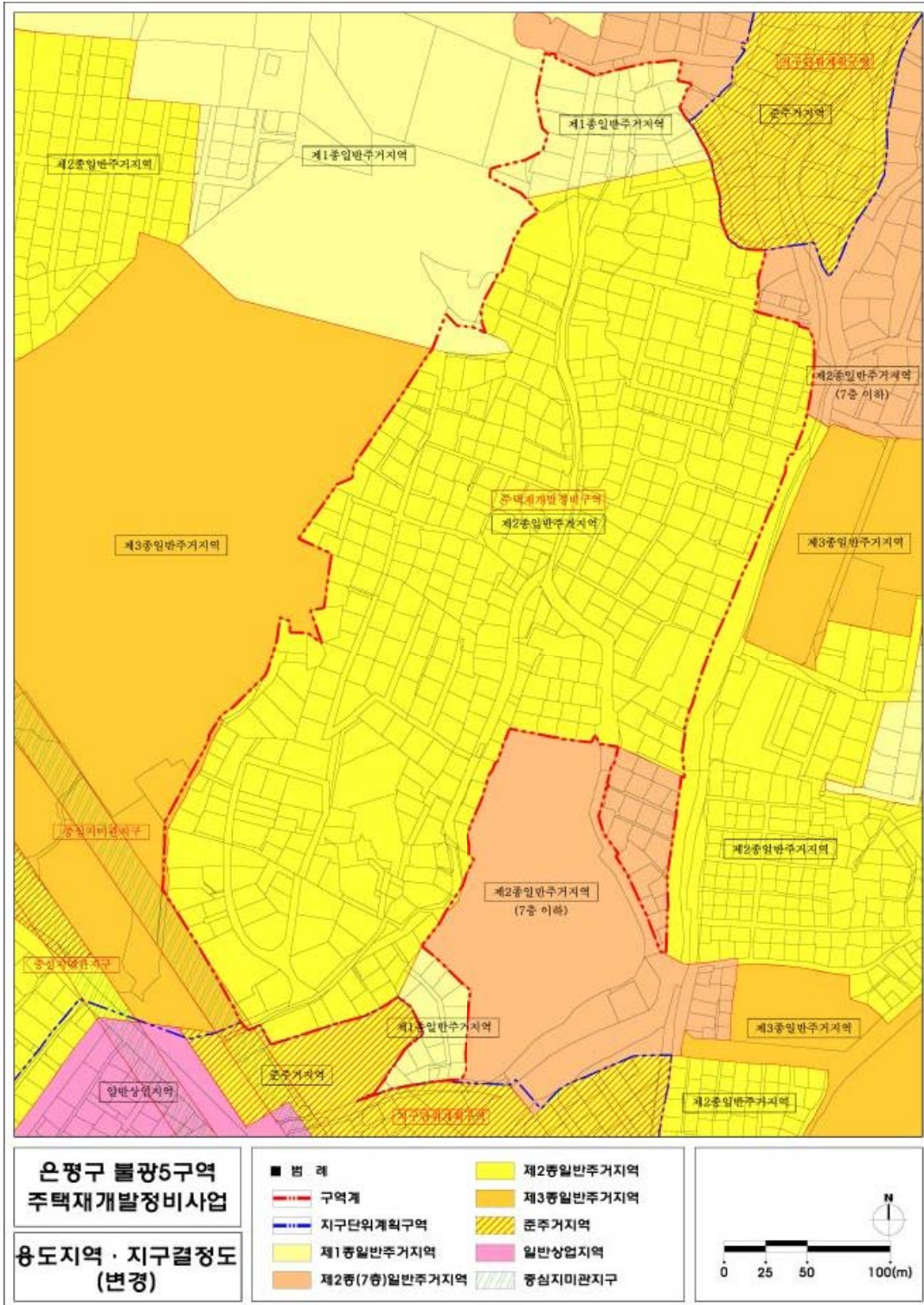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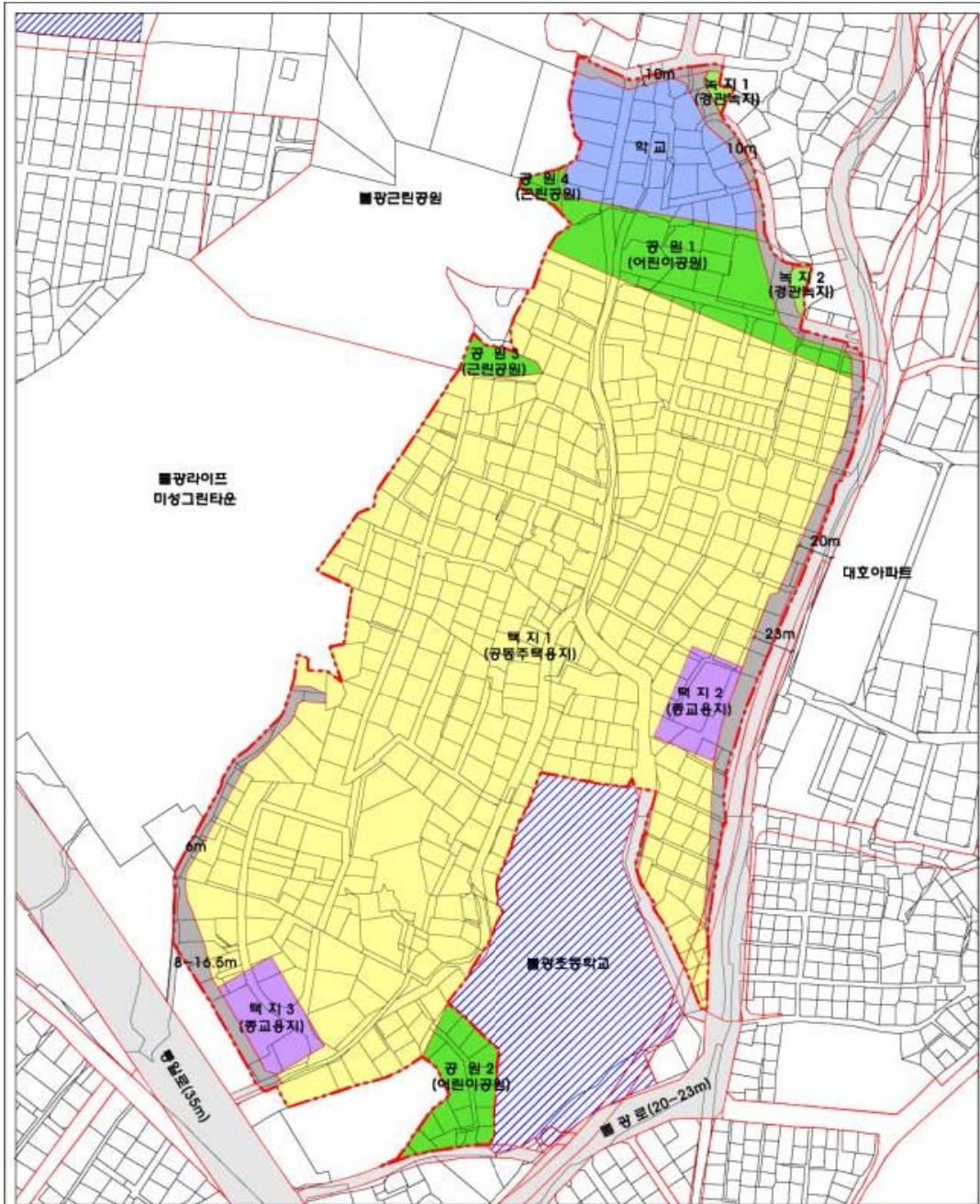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토지이용계획도(기정)]



은평구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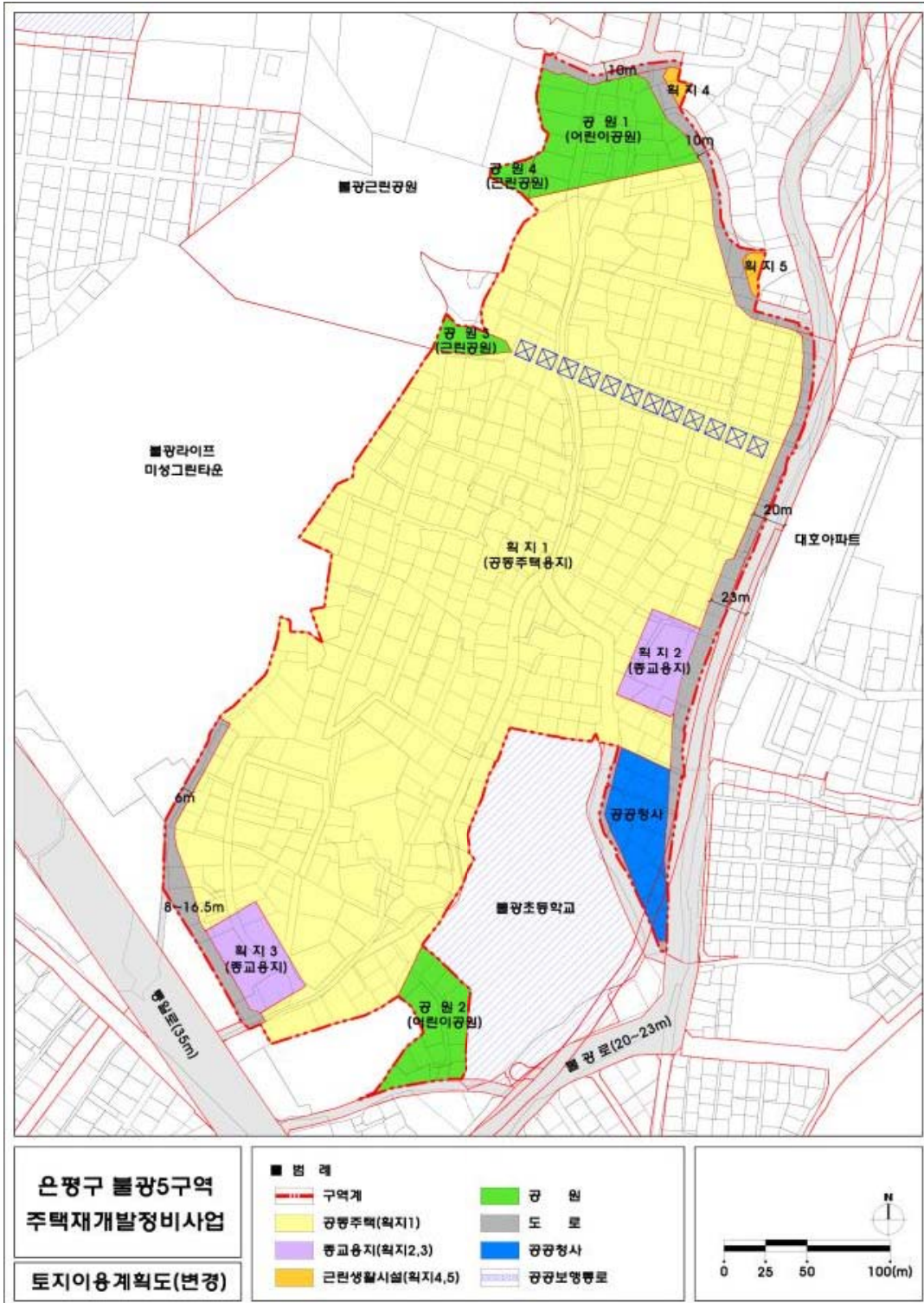
범례

- 구역계
- 공동주택
- 종교용지
-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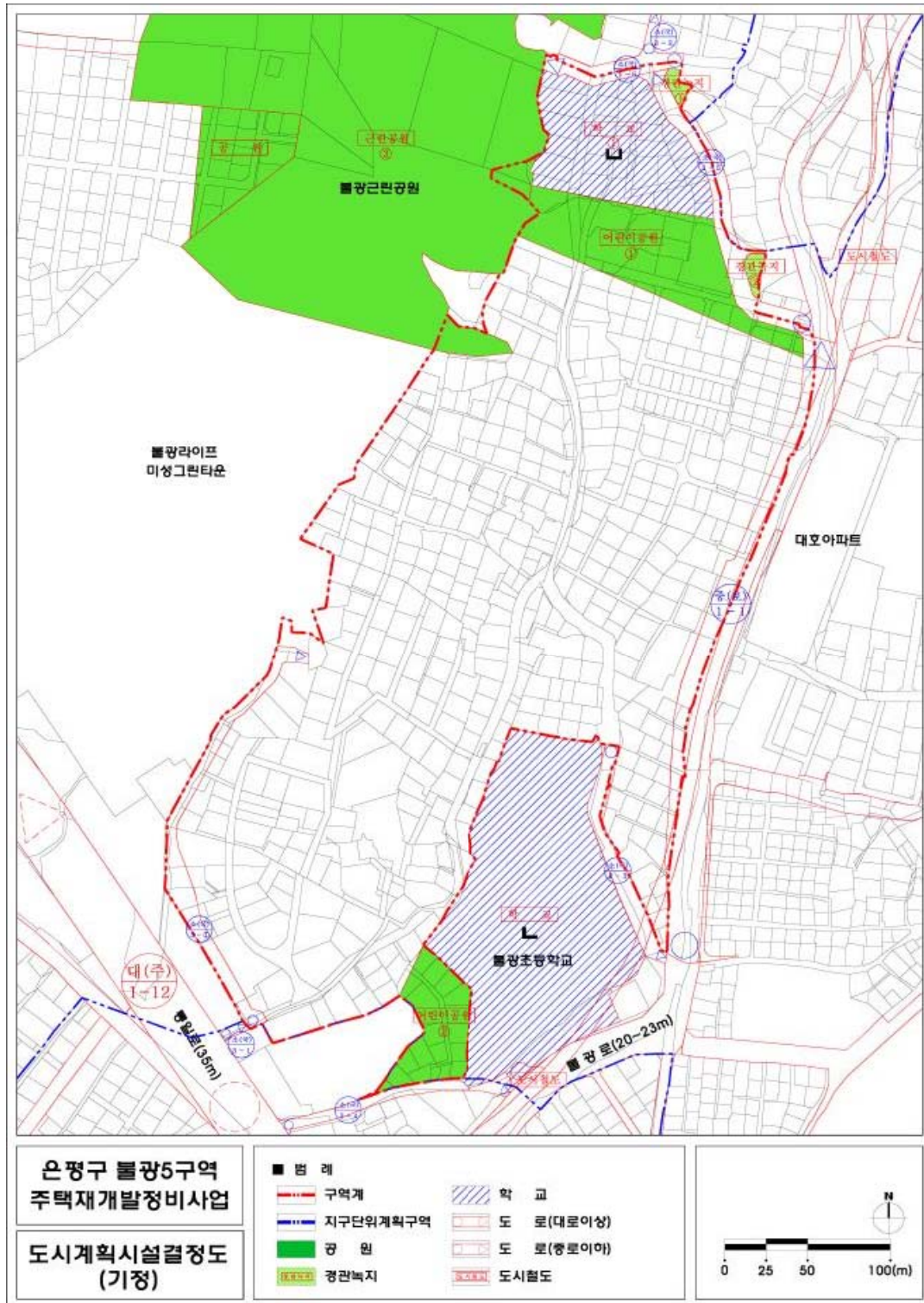
- 공원
- 녹지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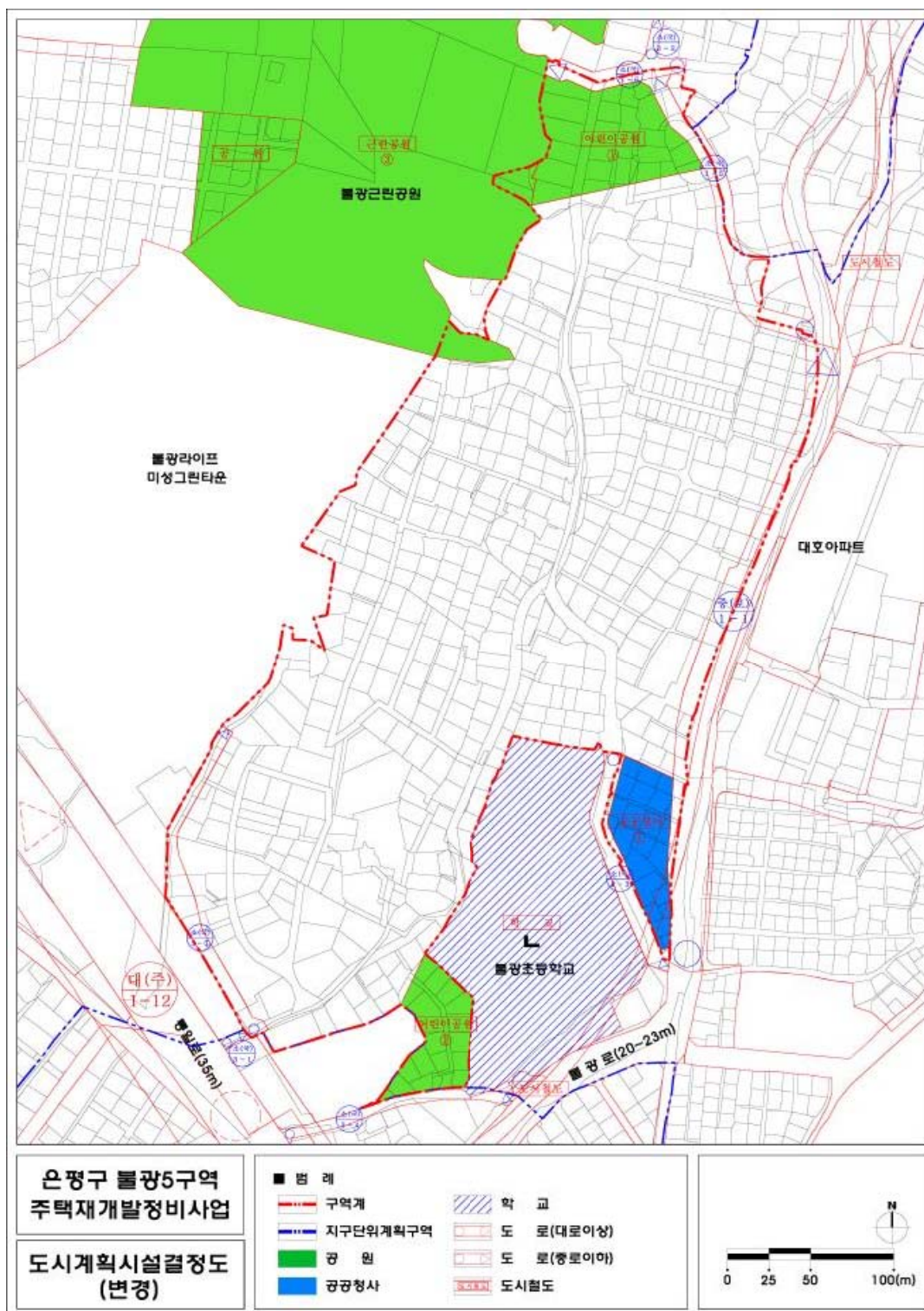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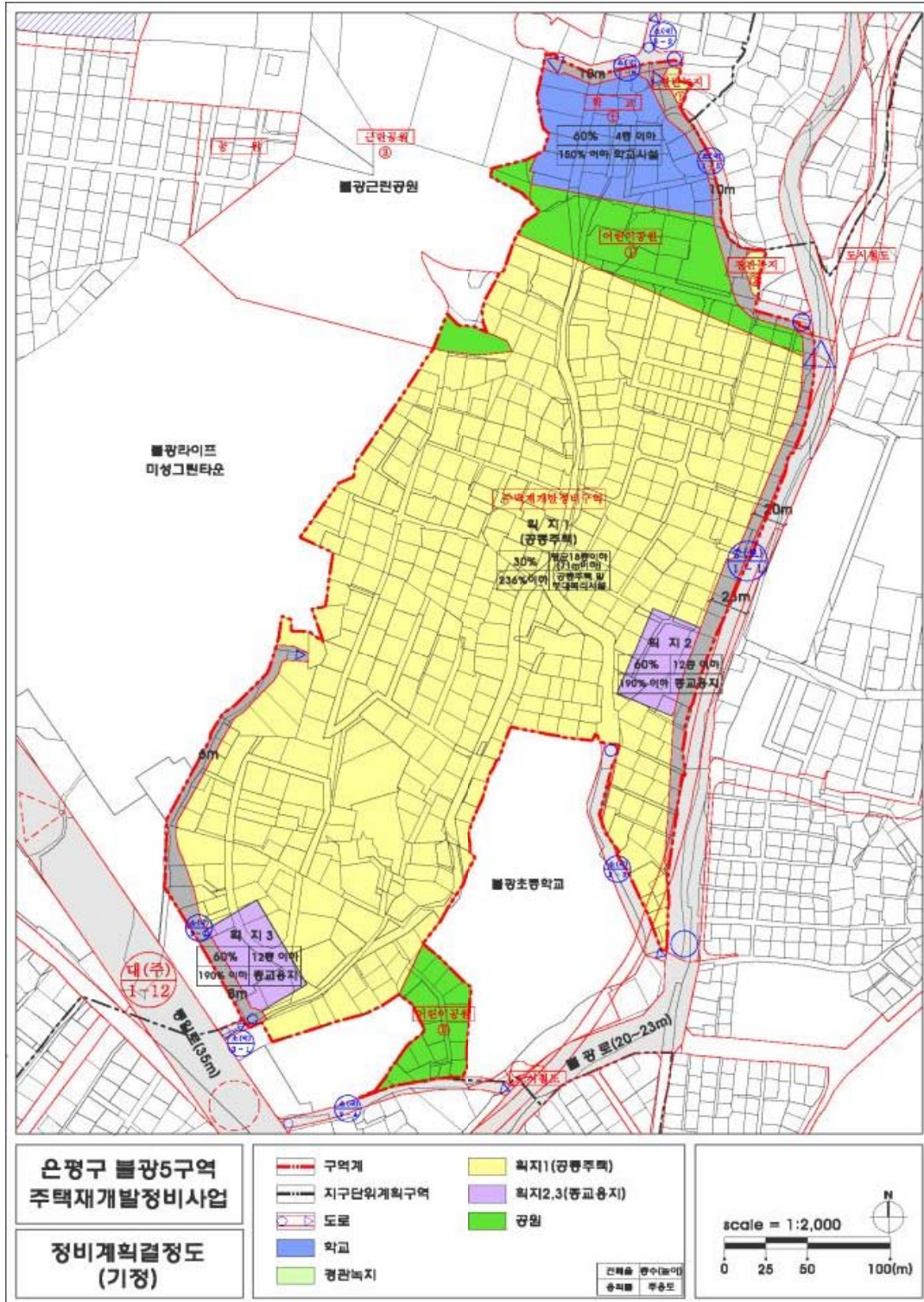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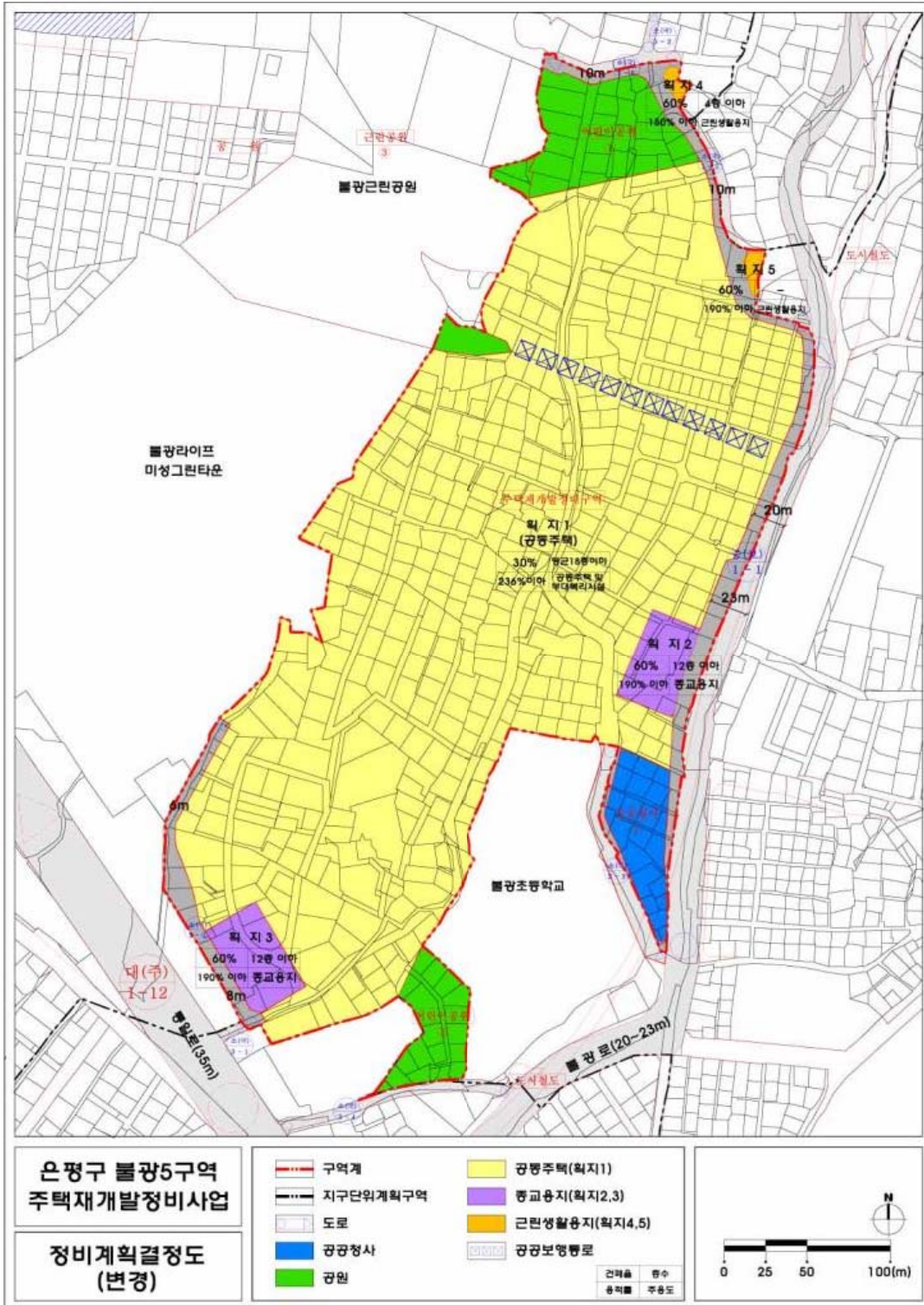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정비계획결정도(기정)]



[정비계획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호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호(2013.02.14.)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4-29호(2014.03.20.), 은평구고시 제2014-45호(2014.05.22.), 은평구고시 제2014-95호(2014.12.18.), 은평구고시 제2015-29호(2015.05.14.), 은평구고시 제2015-45호(2015.06.11.), 은평구고시 제2015-51호(2015.07.16.), 은평구고시 제2016-44호(2016.05.26.)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된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장

1.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 고
기정	C	13	응암동	36,37,53	12.1	190%	12	60%	1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C	13	응암동	36,37,53	12.1	210%	12	60%	1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 계획용적율은 기 결정(서고 제2013-39호, 2013.02.14.)시 210%로 상향된 사항임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제2 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응암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120,765.2	-	120,765.2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0,765.2	-	120,765.2	100.00	
주 거 지 역	소 계	120,765.2	-	120,765.2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8.0	-	1,008.0	0.83	
	제2종일반주거지역(7)	1,242.0	-	1,242.0	1.03	
	제2종일반주거지역	118,515.2	-	118,515.2	98.14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칭	면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0,765.2	－	120,765.2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6,882.6	감 5,716.0	21,166.6	17.53%	
	도 로	13,305.6	－	13,305.6	11.02%	
	녹 지	537.0	－	537.0	0.45%	*녹지1(400㎡,보호수) *녹지2(137㎡)
	공 원	7,247.0	－	7,247.0	6.00%	*소공원(1,113㎡) *어린이공원(4,589㎡) *백련근린공원(1,545㎡)
	공공공지	77.0	－	77.0	0.06%	
	학 교	5,716.0	감 5,716.0	－	－	
획 지	소 계	93,882.6	증 5,716.0	99,598.6	82.47%	
	획지(1)	75,302.7	증 5,716.0	81,018.7	67.0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8,010.9	－	18,010.9	14.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569.0	－	569.0	0.47%	유치원

* 어린이집 기부채납(환산부지 779.35㎡): 관리청 은평구청장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정비 기반 시설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398	응암동 36-50	응암동 39-265		서울시 고시 제2008-396호 (2008.11.06)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일반도로	93	응암동 61-84	응암동 59-33		서울시 고시 제2008-396호 (2008.11.06)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일반도로	62	응암동 4-41	응암동 3		서울시 고시 제2008-396호 (2008.11.06)	
	기정	중로	2	2	15 ~18	국지도로	일반도로	350	응암동 1-3	응암동 35-88		서울시 고시 제2008-396호 (2008.11.06)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정비 기반 시설	기정	대로	2	35	30~33	보조간선 도로	일반도로	4,500	응암동	신사동		서울시 고시 제1979-109호 (1997.03.07)	
	기정	중로	2	1	15~18	국지도로	일반도로	388	응암동 64-3	응암동 39-265		서울시 고시 제2008-396호 (2008.11.06)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31	응암동 64-38	응암동 73-8		서울시 고시 제2013-39호 (2013.02.14)	
	기정	소로	3	4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4	응암동 65-14	응암동 65-16		서울시 고시 제2013-39호 (2013.02.14)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일반도로	88	응암동 36-50	응암동 37-108		서울시 고시 제2008-396호 (2008.11.06)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106	응암동 39-366	응암동 39-428		서울시 고시 제2008-396호 (2008.11.06)	

2) 녹지 및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1	경관녹지	응암동 54-2일대	400	-	400	보호수
기정	녹지2	경관녹지	응암동 61-84일대	137	-	137	
기정	공원1	어린이공원	응암동 65-10일대	4,589	-	4,589	
기정	공원2	소공원	응암동 60-13일대	1,113	-	1,113	
기정	공원3	백련 근린공원	응암동 산1-27일대	1,311,284 (1,545)	-	1,311,284 (1,545)	건교부 고시 제2181호 (1966.02.07)

※ ()안은 구역내 면적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학교	중학교	응암동 35-7일대	5,716	감 5,716	-	서부교육 지원청 해제요청

※ 학교 총부지: 6,616㎡(응암제1재개발정비구역 내: 900㎡, 응암제2재개발정비구역 내 5,716㎡)

■ 학교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중학교	시설폐지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기존 서부2학군에 분산수용 가능하여 학교(중학교)시설 폐지

4) 공공공지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	응암동 59-28일대	77	-	77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민공동 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2,664.41	-	2,664.41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등		6,088.14	400.62	6,488.76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택지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응암제2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120,765.2	가구	120,765.2	478	-	-	478	-	

2) 건축시설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택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응암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20,765.2	택지(1)	75,302.7	응암동 36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8 이하	73.0m/ 23층 평균18층 이하	
			택지(2)	18,010.9	응암동 39-192번지일대					
			택지(3)	569.0	응암동 73-8번지 일대	유치원	관계 법령에 의함.			
			학교부지	5,716.0	응암동 36-24번지일대	중학교				
변경	응암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20,765.2	택지(1)	81,018.7	응암동 36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5 이하	73.0m/ 23층 평균18층 이하	
			택지(2)	18,010.9	응암동 39-192번지일대					
			택지(3)	569.0	응암동 73-8번지 일대	유치원	관계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주택공급계획 : 2,441세대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전용면적 85㎡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2,353세대 (96.39%)			
			전용면적 85㎡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88세대 (3.61%)			
			계		-		2,441세대 (100.00%)			
			▶임대주택 건설비용 : 총 건설 세대수의 15.57%							
		변경	구 분		건설기준		건설계획			
			건립비용		전체세대수의 15%이상		15.57%			
			40㎡ 이하		40%~50%		189세대 (49.74%)			
			40㎡초과~50㎡이하		40%~50%		153세대 (40.26%)			
			50㎡초과~60㎡이하		10%~20%		38세대 (10.00%)			
			합 계		100%		380세대 (100.00%)			
변경	▶주택공급계획 : 2,569세대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전용면적 85㎡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2,481세대 (96.61%)					
	전용면적 85㎡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88세대 (3.39%)					
	계		-		2,569세대 (100.00%)					
	▶임대주택 건설비용 : 총 건설 세대수의 15.18%									
변경	구 분		건설기준		건설계획					
	건립비용		전체세대수의 15%이상		15.18%					
	40㎡ 이하		40%~50%		189세대 (48.46%)					
	40㎡초과~50㎡이하		40%~50%		162세대 (41.54%)					
	50㎡초과~60㎡이하		10%~20%		39세대 (10.00%)					
	합 계		100%		390세대 (100.00%)					
건축법 적용완화 (변경없음)			●공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복측 공원1,2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의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7.12.28.) : 수정가결 - 급회 신설 계획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자치구와 협의하여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건축법 적용완화 (변경없음) •공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북측 공원1,2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의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7.12.28.) : 수정가결

- 금회 신설 계획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자치구와 협의하여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20,765.2	93,882.60	21,952.93	1,914.33	4,030.6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1,952.93\text{m}^2 - 1,914.33\text{m}^2 - 4,030.67\text{m}^2 = 16,007.93\text{m}^2$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학교용지($5,716\text{m}^2 \times 2/3 = 3,810.67\text{m}^2$), 녹지1($400\text{m}^2$, 보호수 존치), 기존 백련근린공원($719\text{m}^2$, 공원3일부) 제외				
계획(기준) 용 적 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 적 률	• 개발가능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a)$ $= 210\% \times (1 + 1.3 \times 0.1705)$ $= 256.54\%$ (정비계획 248%이하)			$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6,007.93 / 93,882.6$ $= 0.1705$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20,765.2	99,029.6	21,166.6	1,884.0	4,05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0,047.6\text{m}^2 - 1,884.0\text{m}^2 - 4,055.0\text{m}^2 = 14,108.6\text{m}^2$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녹지1(400m^2, 보호수 존치), 기존 백련근린공원(719m^2, 공원3) 제외 • 공공시설(건축물)설치 환산부지면적 : 779.35m^2 ($526.91\text{m}^2 + 252.44\text{m}^2$) ○ 토지지분 면적 = 252.44m^2 ○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건축물)연면적 $\times$ 건축공사비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하는 부지가액 = $906.36\text{m}^2 \times 2,737,000\text{원} / 4,708,000\text{원} = 526.91\text{m}^2$ - 공공시설(건축물)연면적 = 906.36m^2 (어린이집) - 건립공사비 = $2,737,000\text{원}$ - 부지가액 = $4,708,000\text{원}$				
계획(기준) 용 적 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 적 률	• 개발가능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a)$ $= 210\% \times (1 + 1.3 \times 0.1515)$ $= 251.36\%$ (정비계획 245%이하)			$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4,108.6 + 779.35) / (99,029.6 - 779.35)$ $= 0.1515$	

마.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증가	변경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응암제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237	증) 204	2,441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응암제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237	증) 332	2,569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 영향에 따라 영향저감방안 강구.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에 의거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여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최소한으로 억제하며 홍수, 수물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구조설계 등으로 각종 재난의 방지 및 예방.	

4.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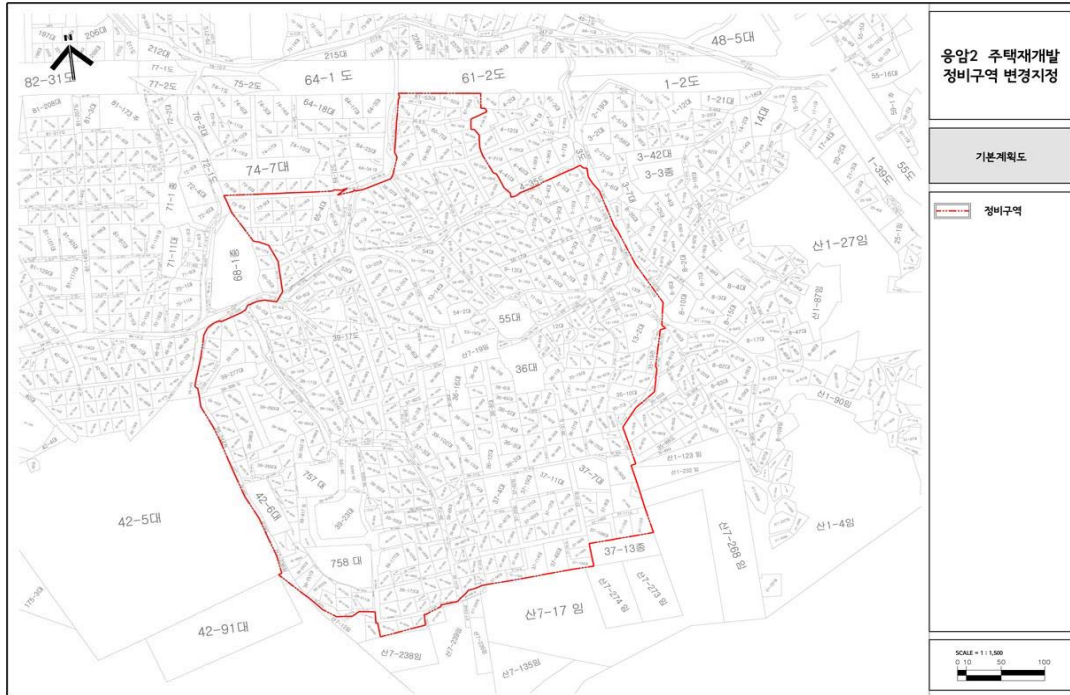
5.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02-2133-7189) 및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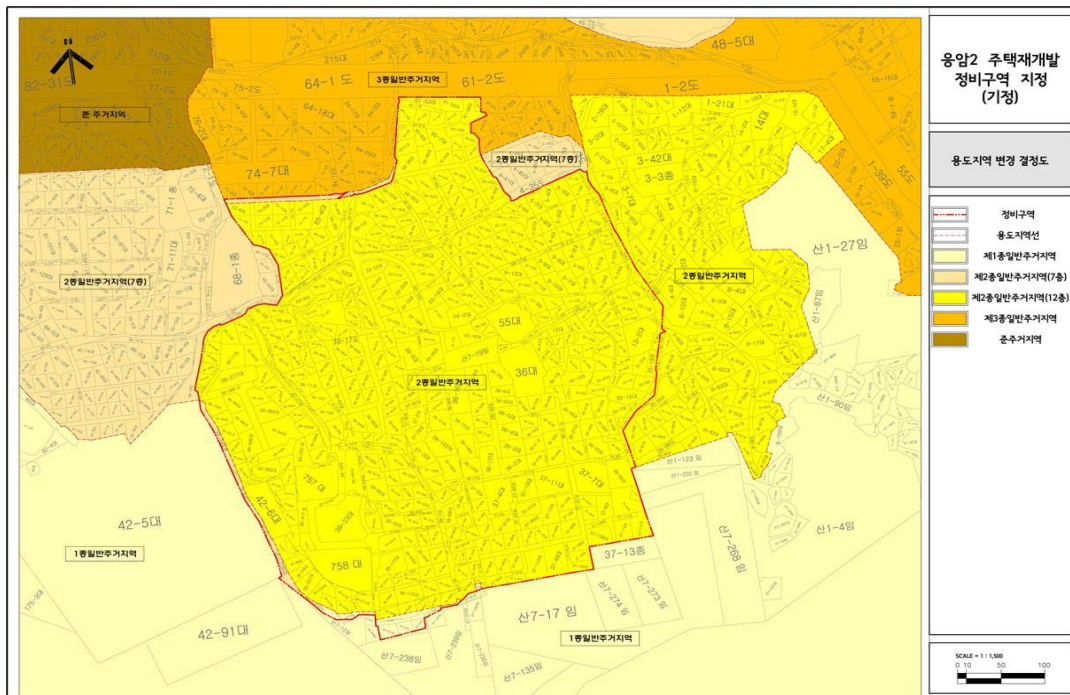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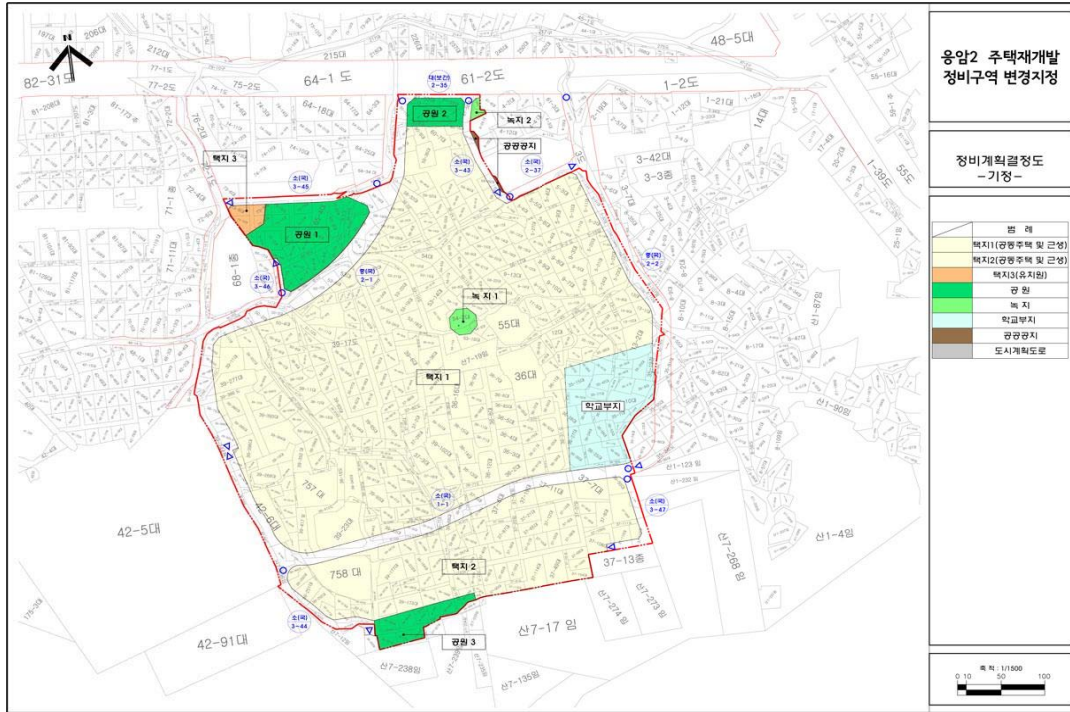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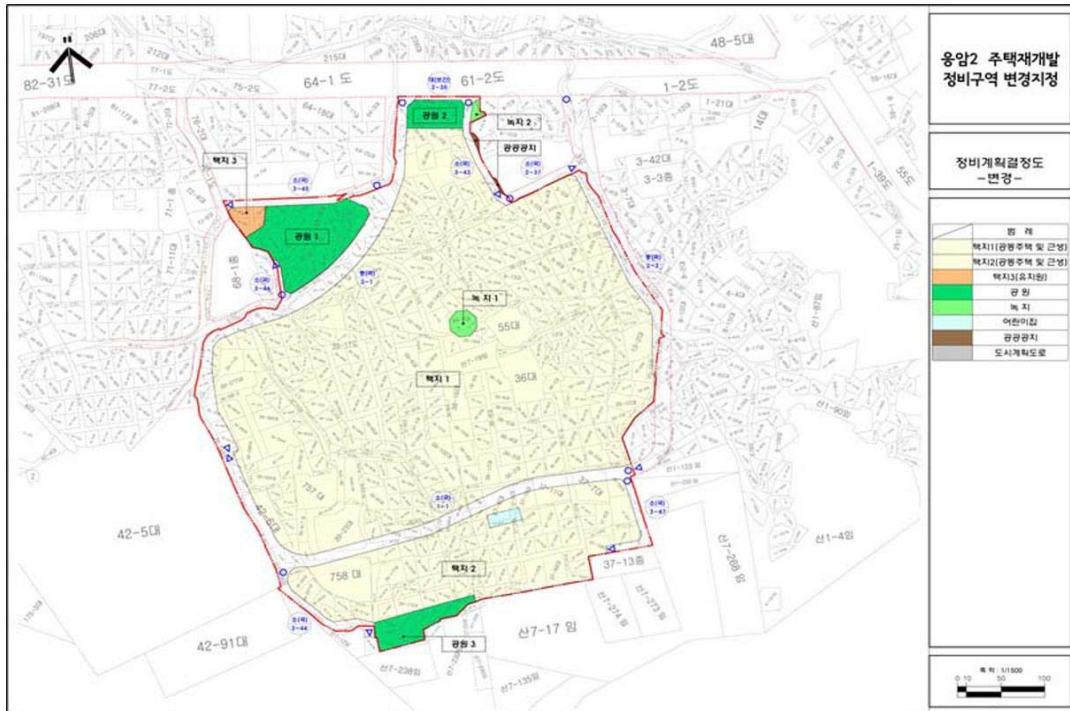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정비계획결정도(기정)]



[정비계획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8호

감리업 등록 공고

『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 설계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종합감리업 (서울S-1-470)	세종기술종합(주) (134111-0070320)	박대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0, 우리벤처타운 2차 1005호	2018.01.25
종합감리업 (서울S-1-471)	㈜서영티이씨 (110111-5378355)	김미옥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6길 35, 803호(성수동2가, 성수동우림이비즈센터)	2018.01.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9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4038)	㈜에이스올 (214-86-68340)	양태철	서울 강남구 도곡로 27길 47, 3층(역삼동, 백산빌딩)	2018.01.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이유홍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일시 : 2017-11-03 10:45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강원80바2588(카고)차량 폭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7.12.26.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2. 28.
 -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3호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매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민방위교육

장 매점 운영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매점 운영자 선정

나. 대상시설

1)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76(석관동 375)

2) 용 도 : 편의시설(매점)

① 취급물품목록

구분	품목명	비고
매점 (판매품목)	보건당국의 제조허가를 획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한 빵,우유,과자류,음료수,빙과류 등 완제품 및 기타 식품은 민방위교육장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유통과정 및 보관상의 청결 등 위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대상 및 예정가격

시설명	주소	전용면적(㎡)	허가업종	예정가격(원)	비고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76	24	매점	10,431,720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2. 임대기간(예정) : 2018. 3. 2. ~ 2021. 3. 1.(3년)

※ 허가개시일은 입찰 및 계약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공고일시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찰자 결정일시 (낙찰선언)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18.2.8.(목)	2018.2.8.(목) 18:00~ 2018.2.14.(수) 16:00까지	2018.2.23.(금) 10:00이후	2018.2.23.(금) 13:00이후	“온비드” (http://www.onbid.co.kr)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입찰집행관PC

4.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이

- 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 ☎1588-5321)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 동일인이 2회 이상으로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마. 2인 이상의 공동입찰은 불가합니다.
- 바. 입찰서 제출의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내에 서울시민방위교육장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 사.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마감일 전에 미리 투찰하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마.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수도권에 등록된 개인(민법상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 바.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사.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서울시측에서 부과한 사용료 등의 체납이 없는 자
- 아. 기타 관계법령의 입찰참가제한 자는 제외(서울시 공공입찰 후 해지한 경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2018.2.14., 16:00)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 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

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찰마감 당일 수표입금시 정상입금이 되는지 확인바람)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 가능함)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에 수취인 명의는 “하나위탁” 또는 “신한위탁”, “우리위탁” 입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일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무효처리됩니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온비드” 상에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가선평합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가선평된 자가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낙찰무효처리하고 차순위 고가 입찰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 낙찰될 경우 “온비드”시스템 상 무작위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붙임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각서, 보안서약서 각1부(붙임3,4).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서약서 및 유의서의 표준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소식→광고→입찰광고→계약관련자료)

※ 사용하가시 제출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9. 입찰보증금의 처리

-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나. “온비드”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착오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 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입대사용자로 선정되었을 때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다.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서울특별시”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에 게재합니다.

12. 사용료 결정방법

- 가. 매년 연간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의 결정은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합니다.
- 나.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한다.(1년 단위로 선납)

13.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첫째 연도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 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됩니다.
-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계약체

결일(예정)까지 반드시 1차분 납입영수증 및 서울시민방위교육장을 피보험자로하고 낙찰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용허가 전까지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사용허가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판매금지 대상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전에 현장답사를 위한 안내설명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주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는 등 반드시 현장답사 확인을 철저히 한 후에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릅니다.

다. 또한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의 해석상 이의가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 해석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및 임대사용자는 본 재산에 대한 권한을 직접 수행하여야하며 타인에게 점유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제공행위,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설 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매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개시 전에 사용·수익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하며, 위반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하고, 허가취소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하던 집기나 물건 등을 허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울시가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안내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터(☎1588-5321)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사항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02)975-5315, fax(02)975-53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①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②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온비드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③ 입찰결과 : 온비드홈페이지 ▶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5. 참고사항

가. 민방위 교육현황(2017년)

1) 민방위교육 횟수:193회 (1월,2월,7월,8월 민방위교육 없음)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비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252	29,539	130	16,669	122	12,870	

- ① 야간·휴일 민방위교육 년 12일 이내 실시
 ② 교육시간 오전, 오후별도 실시로 중식 기간 없음.
 ③ 민방위교육 시간은 변동이 없으나, 교육일수, 교육대상 인원
 다소 변동사항이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2) 재난관련 생활안전체험교육 실시 178회(10,903명)

(붙임1)

공유재산(유상) 사용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석관동 375)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 매점
- 구조 : 세멘벽돌 스라브 1층
- 사용면적 : 24m²

☐ 사용기간 : 2018년 3월 2일 ~ 2021년 3월 1일(3년)

☐ 사용목적 :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 매점운영

☐ 사용료 : ()원

☐ 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붙임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석관동 375)
서울시민방위교육장내 매점
- 구조 : 세멘벽돌 스라브 1층
- 사용면적 : 24m²

☐ 사 용 인

- .○ 주 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2018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으로 해서 그 사용을 허가한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붙임3)

각 서

본인은 2018년 월 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서울시민방위교육장매점)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동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을 시 향후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귀시의 사용허가 기간의 공유재산 사용료 결정에 하등의 이의가 없고 사용허가 기간중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앞으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권리양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 고지된 사용료는 시가 지정한 기일내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 (허가취소 등)도 감수하겠음.

2018년 월 일

각 서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귀하

(붙임4)

<보안서약서>

본인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매점 운영시 민방위교육 등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정보사항 누설시 문제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민방위대원 및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매점의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 ①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 금-----원(금-----원정)으로 한다.
단,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사용료의 납부)

- ① 사용료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되고,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여 재입찰에 부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3조, 4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6. 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로 매점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7. 부도, 파산 등으로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특별한 사유 없이 매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규 및 사용허가조건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 1년 미만 취소불가)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매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 · 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 ① 영업시간은 주간(09:00~18:00)까지이며, 야간(18:00~22:00)까지로 한다.
-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 ·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인 ·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화기 및 전기 · 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 ⑦ 사용자는 서울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 · 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 · 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 ① 사용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중 주류,담배 등 민방위교육장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울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에서 기본 운영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 ③ 영업장에서는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외의 물품, 제조업체 ·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 ④ 서울시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사용자는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 ⑩ 가격을 인상 또는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 ① 사용자는 영업장 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며 교육장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 설치)

-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등)

-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조, 벽체, 방수제,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서울시가 수선한다.
- ⑤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 유리파손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종사원 교육이수 의무)

-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사용자본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허가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허가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수하지 못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이수하지 못한 사유
 3.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 ③ 사용자는 신규채용 종사원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원 고용시 신고의무)

- ① 사용자는 종사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허가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사원의 퇴사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1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서울시(서울시민방위교육장)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12월 중에 총 사용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산정)

- ①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 ④ 익년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개월 전에 징수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 개시일전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예정)까지 서울시민방위교육장을 피보험자로하고 낙찰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행정처분)

-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9조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및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6조(준수의무)

본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조문해석)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른다.

위 치 도

1. 서울시민방위교육장



2. 매점사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일대학교)

1. 서울특별시고시 196호(1979.05.1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6호(2004.7.1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42호(2013.10.17.)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중랑구 면목동 49-3일대 서일대학교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중랑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3, fax : 2133-0739)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2094-2179, fax : 2094-2169)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 학 (서일대학교)	중랑구 면목동 49-3번지 일대	24,509.7	-	24,509.7	1979.5.10. (서고 제196호)	

○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전	변경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관리(6개로 결정) (건축, 녹지, 조경, 운동장, 도로, 주차장) - 건물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 - 구역별 높이·밀도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1. 건설부고시 제73호(1987.3.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2호(2013.1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1, fax : 2133-0739)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2148-2666, fax : 2148-5925)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항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학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104,879.4	-	104,879.4	1987.03.09 (건설부 고시 73호)	합 계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67,012.6	-	67,012.6		제1캠퍼스
		종로구 연건동 28-22 일대	37,866.8	-	37,866.8		제2캠퍼스

○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전	변경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관리(6개로 결정) (건축, 조경, 도로, 주차장, 광장, 운동장) - 건물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 구역별 높이·밀도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9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20	(사회복지)홀트 아동복지회 (대표 : 말리홀트)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긴급구호	300 (현금및물품)	전국	'18.2.2 ~ '18.12.31
						'18.2.2 ~ '19.12.31
2018-21	(재)환경재단 (대표 : 최열)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 및 단체지원	1,000 (현금)	전국	'18.2.2 ~ '18.12.31
						'18.2.2 ~ '19.12.31
2018-22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한경이)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85	-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식이웃 지원	905 (현금및물품)	전국	'18.2.2 ~ '18.12.31
						'18.2.2 ~ '19.12.31
2018-23	(재)이지웰가족 복지재단 (대표 : 김상용)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43	- 가족친화 환경조성 위한 교육 및 취약 가족 지원	150 (현금및물품)	전국	'18.2.2 ~ '18.12.31
						'18.2.2 ~ '19.12.31
2018-24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대표 : 이증명)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1길 30	-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혈액 질환 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사회 복지적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800 (현금)	전국	'18.2.2 ~ '18.12.31
						'18.2.2 ~ '19.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9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주)청일건설	서승제	2018. 1. 3.	서울180001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0, 321호 (대치동, 신안메트로칸)	300,000	신규등록
2	(주)홈일삼엔지니어링	조우석	2018. 1. 8.	서울180002	구로구 디지털로27길 24, 701-2 (구로동, 벽산1차)	300,000	신규등록
3	(주)에스디시흥	임성대	2018. 1. 9.	서울180003	서초구 서초대로 397, 1703호 (서초동, 부피크모나코)	300,000	신규등록
4	마스턴제28호센터포인트명동피에프이(주)	마크로버트 마두라스	2018. 1. 11.	서울180004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 (역삼동)	32,496,400	신규등록
5	(주)비즈니스엔파트너스	배재용	2018. 1. 17.	서울180005	강동구 진랑도로 12, 2층 205호 (천호동, 코오롱아파트)	300,000	신규등록
6	(주)센테리움개발	서종해	2018. 1. 17.	서울180006	강남구 테헤란로410, 2006호 (대치동, 금강타워)	300,000	신규등록
7	(주)윙네트웍스	김경선	2018. 1. 3.	서울140015	구로구 디지털로 288, 307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사업종료	폐업
8	고천건설(주)	윤영선	2018. 1. 4.	서울110034	강서구 강서로 313 (내발산동)	전문인력 부족	폐업
9	에즈원홀딩스(주)	권오성	2018. 1. 11.	서울080051	강남구 봉은사로 418, 9층 (삼성동)	전문인력 부족	폐업
10	(주)디더블유파트너스	손성원	2018. 1. 17.	서울150073	영등포구 당산로 90 (당산로1가, 호서빌딩)	전문인력 부족	폐업
11	디오이코스(주)	강호필	2018. 1. 31.	서울170014	강남구 논현로28길 33, 3층 (도곡동)	사업부진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5)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00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제11조(공고)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조직신설
- 최초 사용일자 : 2018년 2월 2일
- 공인등록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인	2.4cm × 2.4cm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01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동의안 (1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	체육정책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03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제이알 코리아	서울- 제796호	서장원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0, 8층 (역삼동, 숨빌딩) (02-1800-0280)	소재지 (‘18.01.0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29, 4, 5층(삼성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0, 8층 (역삼동, 숨빌딩)
(주)이애플러스	서울- 제836호	박호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4-8, 6층 (대치동, 세왕개발빌딩) (02-1833-6179)	소재지 (‘18.01.03)	(주)더블유디실크로드	(주)이애플러스
(주)네추럴헬스 코리아	서울- 제799호	정청중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21, 301호 (대치동) (02-6416-7070)	소재지 (‘18.01.1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23, 2층 201호(대치동, 수안 빌딩)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21, 301호 (대치동)
(주)셀레스트 코리아	서울- 제724호	이진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15길 6, 6층 (잠원동, 신사제2빌딩) (02-3453-9881)	소재지 (‘18.01.08)	(주)파베로	(주)셀레스트코리아
스마트 시스템셀(주)	서울- 제874호	신현순 박용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0, 7층 701호 (역삼동, 윤익빌딩) (02-501-2866)	이메일 (‘18.01.17)	miralush@ hanmail.net	sscell@sscell.co.kr
				소재지 (‘18.01.1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13, 지하1층, 2층(역삼동,태현빌딩)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0, 7층 701호 (역삼동, 윤익빌딩)
(주)더하이	서울- 제751호	황규현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 A동 1914호 (양재동, 삼호물산빌딩) (02-552-4456)	소재지 (‘18.01.12)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6길 24, 1층 (가락동, 4H빌딩)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 A동 1914호 (양재동,삼호물산빌딩)

2)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알즈너서울 치타대리점	서울 후- 제668호	곽호철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14길 31, 1층 (면목동) (010-3929-1318)	상 호 (‘17.01.06)	알즈너치타대리점	알즈너서울치타대리점
				소재지 (‘17.01.06)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105동 1111호 (상계동, 벽산아파트)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14길 31, 1층 (면목동)
유니베라 신대방대리점	서울 후- 제308호	이강임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51-1,301호 (대림동) (02-831-1501)	소재지 (‘17.08.01)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01, 2층 (대림동)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51-1,301호 (대림동)

3)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에스엠	서울 - 제849호	강덕신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904호(공덕동, 품림브이아이피텔) (070-7807-0707)	’17.12.21.	공제조합해지
앤앤비코리아(주)	서울 - 제752호	정인호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92, 301호(잠실동) (02-415-3129)	’17.09.28.	공제조합해지
(주)에스알라이프 앤글로벌	서울 - 제768호	박홍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7, 6층(역삼동, 창성재단빌딩) (02-6325-1010)	’18.01.26.	공제조합해지

4)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알즈너 재하대리점	서울 후- 제685호	이길순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43길 19, (시흥동) (010-8480-6390)	’17.12.31.	사업부진
마임신대방 남부지사	서울 후- 제595호	강현주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86-1, 3층(신대방동) (02-832-8835)	’17.01.08.	개인사정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마임시흥 남부지사	서울 후- 제276호	최성례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3, (시흥동) (02-893-0770)	'17.01.16.	방문판매로 전환
알즈너 누구나대리점	서울 후- 제687호	전정갑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66길 72, 1층(망우동) (02-952-5399)	'17.02.15.	개인사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06호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공고

단독(다세대)주택 보존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소규모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1. 공모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분 야	공동 응모	비고
마을만들기	5인 이내	응모자 1인(팀)이 2점 이내 작품 응모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3인 이내	

2. 공모분야: 대상지 1개소 선택 후 공모 기본방향 및 기준에 적합한 계획(안) 제시

분 야	공모 대상지 기준	
마을만들기	자유대상지	▶ 서울시 내 소재지로 5만㎡ 내외의 아래지역 -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예정)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분 야		공모 대상지 기준
마을만들기	자유대상지	※ 대상지 제외 - [참고1] 도시재생활성화·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타 사업이 결정된 구역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지정대상지	▶ [참고2] 시·자치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5개소 ※ 구역계 조정 가능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유대상지	▶ 서울시 내 소재지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안) 제3조제2호(대상범위) - “ 제4조(가로구역이 범위)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지정대상지	▶ [참고3] 시·자치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5개소

3. 공모 기본방향

- 다양한 사업방식(모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 발굴·육성

4. 필수 반영 사항

분 야	내 용
마을만들기	전면철거 후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개발로 마을공동체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기존 단독(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및 아이디어를 발굴 등을 위한 공모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舊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형성강화를 위한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기 바람 ① 공모 시 당해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서에 공모 당해지역 주민 면담일시, 면담주민, 면담내용 등 포함 ② 자치구(당해지역)와 충실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자체평가서에 자치구(당해지역) 관련부서 협의일시, 협의부서, 협의내용 등 포함 ③ 공모자가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분석과 평가 포함) ④ 당해지역에 대한 미래상 설정(정책적·공간적 부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구체적 수단 제시 ⑤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경제적 재생방안 등 제시(중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붕괴, 사업의 자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주택으로 주거공간의 개선과 함께 공용 옥외공간, 주민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을 통해 주거공동체와의 조화를 고려한 공간설계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기 바람 ① 공모자가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사업성 분석 제외) ② 기존 동네 특성에 맞춘 계획안 제시 (도로변 근린상가시설, 주거, 상가 등 현재 지역을 구성하는 기능 반영) ③ (선택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 제시) ④ 평면·입면, 건물배치, 조경, 층수(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스카이라인 등

5. 공모일정

- ※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에 공지 예정
- 사업설명회 : 2018. 3. 28.(수) 15:00 ~ 18:0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작품접수 : 2018. 8. 23(목) ~ 24.(금) (2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로비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예정) : 2018. 9.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전시 및 시상(예정) : 2018. 10 ~ 11.

6. 공모 제출물

제출물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출품신청서 1부	[서식1] 2점 응모 시 작품별로 각각 제출	
자체평가서 1부	[서식2] 필수 반영사항	[서식3] 필수 반영사항
작품설명서[서식4] (ppt 7부 출력 후 제출)	- 파워포인트 20매(A4) 내외로 작성 - 필수 작성사항(위치도, 도시계획 내용, 대표지번, 구역면적, 현황사진) 5매 내외	- 파워포인트 10매(A4) 내외로 작성 - 필수 작성사항(위치도, 도시계획 내용, 대표지번, 구역면적, 현황사진) 3매 내외
프레젠테이션 판넬 [서식5]	A0 size(841x1,189mm)1매, 5T폼보드 부착 (가로·세로 제한 없음, 사이즈규격 준수)	
CD제출 (usb제출 금지)	작품설명서(ppt파일 첨부, ppt를 pdf변환하여 첨부) 프레젠테이션 판넬 JPEG (300dpi 9933×14043 pixel 정도로 함)	
재(휴)학증명서 각1부	공모기간 중인 `18년 1학기의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참가자 전원)	

7. 제출방법

- 위 공모 제출물을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프레젠테이션 판넬, 작품설명서에는 사업대상지 위치 및 작품명을 제외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학교명(학교마크),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를 금함(실격사항)**
- 포장은 작품별 개별 포장하여 제출하되 우편물(등기)의 경우 **응모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인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운송료는 응모자 부담)

(보내실 곳)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4층)

8. 시상 및 심사(총 15점, 시상금 41백만원)

구 분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위액	계(점)	총 금액	단위액	계(점)	총 금액
소 계		9	3,200만원		6	9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300만원	1	300만원
우수상	500만원	2	1,000만원	150만원	2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6	1,200만원	100만원	3	300만원

※ 시상 및 심사 유의사항

- 추진상황에 따라 시상 조정(심사결과에 따라 수상 해당자가 없을 수 있음)
- 작품 심사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별도 추진
- 심사에 출품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 작품(표절 등)이 아니거나, 외국사례 복사 제출 또는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동일·유사한 작품은 심사제외 및 수상 취소

9. 일반 유의사항

- 수상작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 과도하게 개념적이거나 활용가치 대비 과도한 공급 비용이 예상되는 아이디어는 지양바랍니다.
- 반환기한(추후 통보)내 반환하지 않는 작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 주관기관인 서울시는 출품물의 반환기간 내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및 공모요강, 참고자료(마을공모전 길라잡이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니 응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itybuild.seoul.go.kr>)
- ※ 역대 출품작 및 수상작 열람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Tel 02-2133-7245, Fax 02-2133-0753)

2018. 02.

서울특별시장

[참고1]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주거환경관리구역(마을만들기 자유공모 대상지제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세부위치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참고

연번	위 치		면적(㎡)	특 성
1	창신송인	종로구 창신1·2·3동, 송인1동	830,000	뉴타운 해제, 봉재산업 밀집지역
2	가리봉	구로구 가리봉동	330,000	뉴타운 해제,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
3	해방촌	용산구 용산2가동	330,000	남산고도지구 내 구릉지형 주거지역
4	성수동	성동구 성수1가 1·2동, 2가 1·3동	890,000	토착산업, 노후주택 혼재지
5	신촌동	서대문구 신촌동	410,000	대학-지역사회 연계지역
6	암사동	강동구 암사1동	635,000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역사자원 인근 주거지역
7	장위	성북구 장위1동	320,000	재촉지구 내 뉴타운 해제지역
8	상도4동	동작구 상도4동	750,000	전형적 골목길 저층주거지

■ 주거환경관리구역

※ 고시 총37개 구역('18. 1. 1.기준)

연번	위 치	마을명	면적(㎡)	특 성	추진현황
1	마포구 연남동 239-1		82,900	2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0.2.25)	완료
2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43,560	2,3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0.11.25)	완료('13.12)
3	동작구 흑석동 186-19	흑석숲마을	26,841	1종일반/존치지역	완료('13.12)
4	금천구 시흥동 957	박미사랑마을	49,282	2종일반/존치지역	완료('14.2)
5	성북구 길음동 1170	소리마을	26,566	3종일반/존치지역	완료('13.11)
6	도봉구 방학동 396-1	방아골	25,229	1,2종일반	완료('14.6)
7	구로구 온수동 67	온수골	59,472	2종일반	완료('14.12)
8	성북구 삼선동1가 300	장수마을	18,428	1종일반/재개발 해제지역 ('13.5.2)	완료('13.2)
9	구로구 구로동 111		30,996	2,3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1.9.1)	완료('14.5)
10	도봉구 도봉동 280	새동네	42,365	1종일반/도봉산관광지	완료('14.12)
11	금천구 시흥동 950	박미사랑마을	96,870	2종일반/존치지역	완료('14.12)
12	은평구 신사동 237	산새마을	45,756	1,2종일반	완료('15.6)

연번	위 치	마을명	면적(㎡)	특 성	추진현황
13	구로구 개봉동 271	이심전심마을	32,958	1,2종일반	완료('15.10)
14	영등포구 대림2동 1027	한민족공동체가 꽃피는마을	42,959	2종일반/중국동포 밀집지역	완료('15.12)
15	은평구 응암동 30	산골마을	13,896	2,3종일반	완료('16.12)
16	성북구 정릉동 372	정든마을	35,150	2종일반/부흥주택 등 밀집지역	완료('17.7)
17	동대문구 휘경동 286	휘경마을	39,396	1종일반	완료('17.8)
18	동작구 상도동 259-40	성대골	47,580	1,2종(7층)일반	설계/공사중
19	성북구 정릉동 716-8	삼덕마을	33,443.6	1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3.1.31)	완료('17.7)
20	강북구 미아동 776-68	양지마을	22,080	2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3.10.31)	완료('17.9)
21	성북구 상월곡동 24	삼태기마을	35,997	1,2종일반	설계/공사중
22	관악구 신림동 306	돌샘행복마을	42,715	1,2종일반/신림4재정비촉진지역해제('16.6.23)	설계/공사중
23	영등포구 도림동 152-76	장미마을	70,519	2(7층), 2종일반	설계/공사중
24	영등포구 대림1동 877-22	조롱박마을	50,336	1,2(7층), 2종일반	설계/공사중
25	은평구 불광동 23	수리마을	49,619	1,2종(7층)일반/재건축해제지역('13.8.1)	설계/공사중
26	양천구 신월1동 232	곰달래꿈마을	45,754	1,2종(7층)일반	설계/공사중
27	종로구 명륜3가동 1-1061	명륜, 혜화마을	287,743.1	1,2종(7층), 2,3종일반/자연녹지/일반상업	설계/공사중
28	구로구 가리봉동 2	한뫼모아마을	43,400	2종(7층)일반, 준공업	설계/공사중
29	강북구 수유동 516-21	인수봉숲길마을	40,446	1,2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5.6.18)	설계/공사중
30	금천구 독산동 1100	금하마을	56,611	1,2종(7층), 2종일반	설계/공사중
31	종로구 부암동 265-21	부암마을	98,117.8	1종전용/1,2종일반/자연녹지	설계/공사중
32	관악구 신림동(난곡동) 710	굴참마을	51,398.1	1,2종(7층), 2종일반	설계/공사중
33	양천구 신월5동 77	해오름마을	37,551	2종(7층), 2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3.8.1)	설계/공사중
34	도봉구 방학동 605	방학숲속마을	182,004	1,2종(7층)일반/고도지구	설계/공사중
35	종로구 행촌동 210-678	행촌마을	141,323	1,2종(7층), 2,3종일반/자연녹지	설계/공사중
36	성북구 석관동 73-1	한천마을	64,692	2종(7층), 2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3.10.31)	설계/공사중
37	성북구 삼선동1가 11-53	369마을	57,357	1,2종(7층), 3종일반/일반상업 /재개발해제지역('13.1.31.)	설계/공사중

[참고2] 마을만들기 지정대상지(5개소) ※ 자세한 구역계는 홈페이지 참조 / 구역계 조정 가능

연번	공모전 대상지			면적(㎡)	비고
	자치구	동	세부 위치		
1	구로구	개봉1동	33번지 일대	55,000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성북구	돈암동	74-15번지 일대	17,235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17.10.10.)
3	은평구	구산동	177번지 일대	32,494	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17. 3. 30.)
4	강북구	인수동	538-22번지 일대	32,000	제1종·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5	관악구	청룡동	1535-10번지 일대	68,720	재건축정비구역해제('15.11.05.)

[참고3]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대상지(5개소) ※ 자세한 구역계는 홈페이지 참조

연번	공모전 대상지			면적(㎡)	비고
	자치구	동	세부 위치		
1	종량구	면목동	173-2번지 일대	1,456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	강서구	등촌동	643-56번지 일대	2,357.5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3	강서구	등촌동	653-8, 12번지 일대	1,611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송파구	마천동	26-1번지 일대	1,189.1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서초구	서초동	1451-67번지 일대	2,847	제2종일반주거지역

5mm

공 백

(65mm × 35mm)

서울시보 제3450호

서울특별시

2018. 2. 8.(목)

5mm

[서식1] 출품신청서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출품 신청서

작품명		○○○ ○○○○ ○○○○○○○○		
대상지역 현황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번지 일대 (○○,○○○㎡)		
	지정대상지 여부	자유대상지 ☐ 지정대상지 ☐		
	지역,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사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명], 재정비촉진지구 및 기타 정비(예정)구역 [구역명]		
참여자	성 명	학 교 (학과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참여자	홍길동	○○대 (○○학과)	(주소) : (e-mail 주소) :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에 위와 같이 응모 신청합니다.

2018. 8. .

대표 참여자 성명 : (인)

- 첨부물 : 1. [서식2, 3] 자체평가서 1부.
2. [서식4] 작품설명서 7부.
3. [서식5] 프리젠테이션 패널.
4. CD 1부(작품설명서 ppt, pdf 및 패널 파일 포함) * usb 제출 금지
5.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 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

작품명 : _____

필수 반영 사항	반영	미반영	비고
당해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갖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면담일시, 면담주민, 면담내용 등)	☐	☐	
자치구(당해지역)와 충실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협의일시, 협의부서, 협의내용 등)	☐	☐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분석 및 평가 등)	☐	☐	
당해지역에 대한 미래상 설정(정책적 · 공간적 부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였는가?	☐	☐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과 사회적 · 경제적 재생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는가?(중요)	☐	☐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8. 8. .

대표 참여자 성명 : (인)
 참여자 성명 : (인)
 참여자 성명 : (인)
 참여자 성명 : (인)
 참여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3]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평가서

작품명 : _____

필수 반영 사항	반영	미반영	비고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사업성 분석 제외)	☐	☐	
기존 동네 특성에 맞춘 계획안 제시하였는가? (도로변 근린상가시설, 주거, 상가 등 현재 지역을 구성하는 기능 반영)	☐	☐	
(선택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 제시)	☐	☐	
평면·입면을 반영하였는가?	☐	☐	
건물배치를 반영하였는가?	☐	☐	
조경을 반영하였는가?	☐	☐	
용도지역에 맞는 층수를 반영하였는가?	☐	☐	
건폐율을 반영하였는가?	☐	☐	
용적률을 반영하였는가?	☐	☐	
스카이라인을 반영하였는가?	☐	☐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8. 8. .

대표 참여자 성명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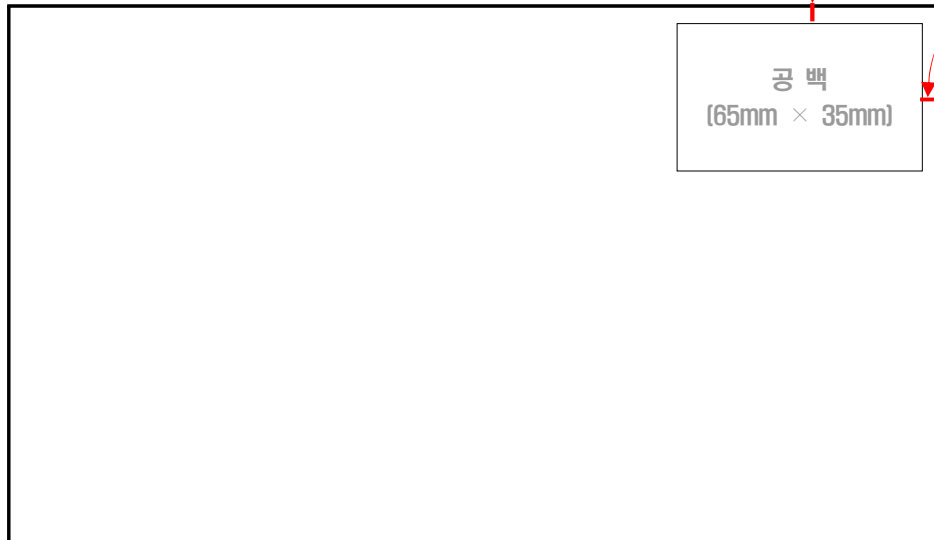
참여자 성명 : (인)

참여자 성명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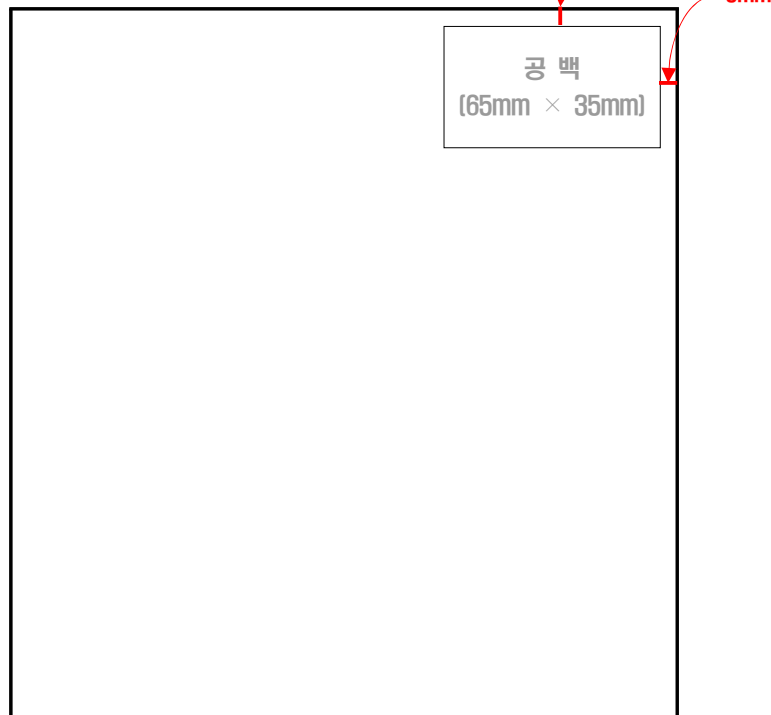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4] 작품설명서(ppt) 7부 ※ A4규격, 가로세로 제한 없음, 학교명,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 등을 금함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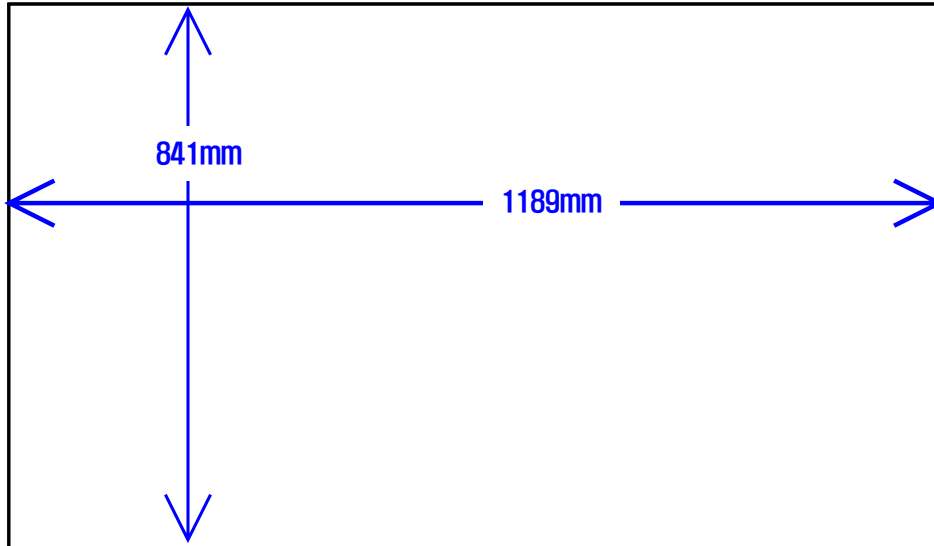


(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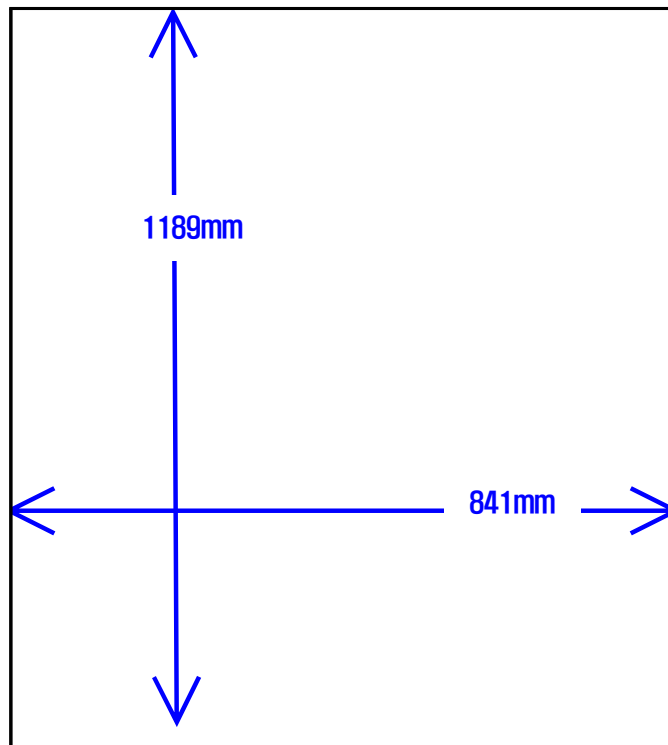


[서식5] 프레젠테이션 판넬 ※ A0규격, 가로세로 제한 없음, 학교명,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 등을 금함

(가로)



(세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13호

남산제1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81호(2015.9.17.)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번지 일대 남산제1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남산제1근린공원
2. 위 치 : 중구 회현동 1가 100-177번지 일대
3. 면 적 : 604.178㎡
4. 조성계획 변경(안)
 - 주요(변경) 내용 : 교양시설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발물관 조성)
 - < 신 설 >
 - 교양시설
 - 보호각 1동 : 시설면적 2,030㎡ (연면적 1,780㎡) 지상1층
 - 인포센터 1동 : 시설면적 307㎡ (연면적 246㎡) 지하1층
 - 배전터 339.41㎡, 분수대 292.71㎡, 신궁기단 30.00㎡
 - 편익시설
 - 공중화장실 : 시설면적 54㎡ (연면적 91㎡) 지하1층
 - 매점(인포센터 내 위치) : 58㎡ (연면적 45㎡) 지하1층
 - < 폐 지 >
 - 편익시설 : 화장실 1동 71.24㎡ (연면적 109.20㎡) 지상2층
 - < 변 경 >
 - 편익시설 : 주차장 (증) 330.02㎡ (1299.77㎡→1629.79㎡)
 - 기반시설 : (감) 3,144.93㎡
 - 녹지 및 기타 : (감) 1052.19㎡ (482,356.89㎡→481,304.70㎡)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14호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2호(2017.9.28.)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장충동 2가 197번지 일대 장충단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장충단근린공원
2. 위 치 : 중구 장충동 2가 197번지 일대
3. 면 적 : 289.209㎡
4. 조성계획 변경(안)
 - 주요(변경) 내용 : 국립중앙극장내 지하주차장 조성
 - 기반시설 : 도로(증 58.19㎡)
 - 교양시설 : 별관동(감 587.38㎡)
 - 편익시설 : 주차장(증 409.08㎡)
 - 건축물 바닥면적(증 340.28㎡), 건축물 연면적(증 11,029.30㎡)
 - 녹지 및 기타 : 녹지 부지면적(증 120.11㎡)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22호

2018년 서울시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2. 용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 도정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18.2.19.시행)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용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용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정비사업 용자금 신청·결정 내역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구역일 것

사.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3. 용자금의 용도 :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4. 용자금의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나. 신용대출

1)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2)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용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추진위원회]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1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12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15억원

[조합]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2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3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40만㎡미만 : 최대 4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40만㎡이상 50만㎡미만 : 최대 50억원
-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50만㎡이상 : 최대 60억원

5. 용자금 지원

가. 지원금액 : 금16,000백만원(도정 13,000, 재촉 3,000)

1) 2018년 제1차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 : '18.4월

- 심의일정 : 공고 3월, 심의 4월
- 용자금액 : 8,000백만원(도정 6,500 / 재촉 1,500)

- 2)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 : '18.9월
 - 심의일정 : 공고 8월, 심의 9월
 - 용자금액 : 8,000백만원(도정 6,500 / 재축 1,500)
- 나. 지원신청 : 회차별 일정 공고에 따라 관할 자치구로 신청
- 다.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
 ※ 대출기한 : 용자지원 결정이후 90일 이내
- 라. 대출이자 : 담보대출 연 2.0%, 신용대출 연 3.5%
6. 용자지원의 부적격 및 취소 처리
- 가. 용자금을 신청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지원의 부적격처리를 할 수 있음
- 1) 용자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용자 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3)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용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나. 용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취소'의 경우, 용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용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용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
7.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
- 가. 추진위원회
- 1) 용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용자금 상환기간 만료시 용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하여야 함. 단, 용자기간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2) 용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함.
 - 3) 용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나. 조 합
- 1) 용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용자기간 만료시 용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하여야 함. 단, 용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2) 용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 3) 용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용자신청서 1부.
 - 용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계획 상세내역서 각 1부.

- ※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기준으로 작성
 - ※ ‘총회 예산(안) 의결’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한 내역만 인정
 - ※ 서울시 도정 조례 제39조제2항에서 한정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로 용도가 한정되며 기타 사업비(예비비, 금융비용, 부담금 등)은 용자대상에서 제외됨.
 - 용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1부.
 -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목록, 계약대장 각1부.
 - 조합 및 추진위원회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1부.
 -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총회 결의) 1부
 - ※ 최초 2년 이내 총회에서 의결한 한도 내 지원(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용자금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내용 포함
 - 아래 사항이 명시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 각 1부.
 - ▶ 용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 용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각 1부.
9. 용자금 신청 및 결정내역 공개
- 용자금 결정내역을 각 조합/추진위원회의 클린업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함
 - 추진위원회에서 신청·결정된 용자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대출 가능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회차별 공고시 게시함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7209)

고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8-15호

북촌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4호(2017. 4.20.)로 결정된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안국동 175-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2018년 제1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 1.23.)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종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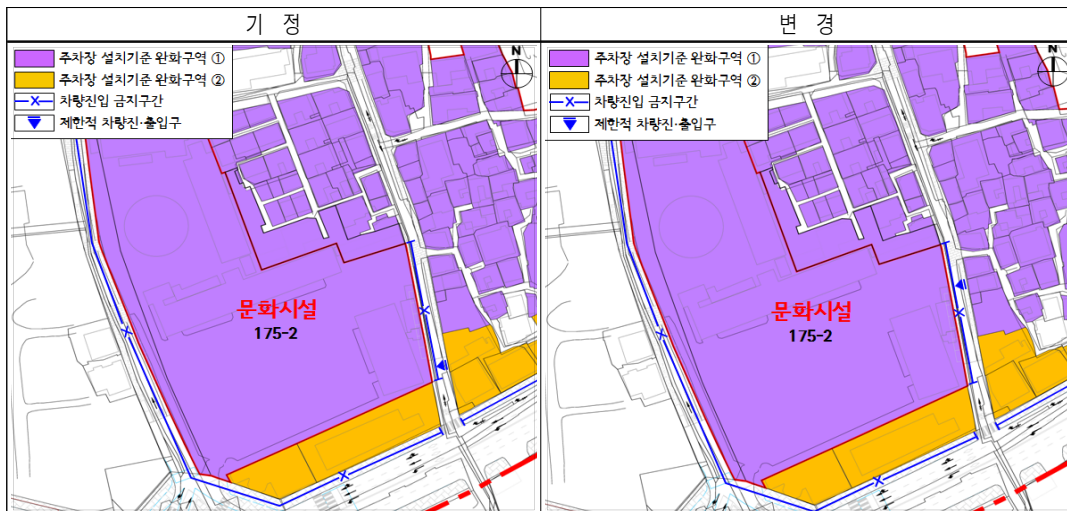
1.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적용구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입 금지구간	- 간선가로변(삼청동길, 가회로, 율곡로, 북촌길) - 주요 보행자 통행 가로변(계동길 남측, 화개길, 서울공예박물관에 접한 감고당길·윤보선길)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함 - 서울공예박물관에 접한 감고당길 및 윤보선길 차량금지구간 적용(화물, 장애인, 긴급차량에 대한 이동동선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 차량진·출입구 설정)	해당구간 도면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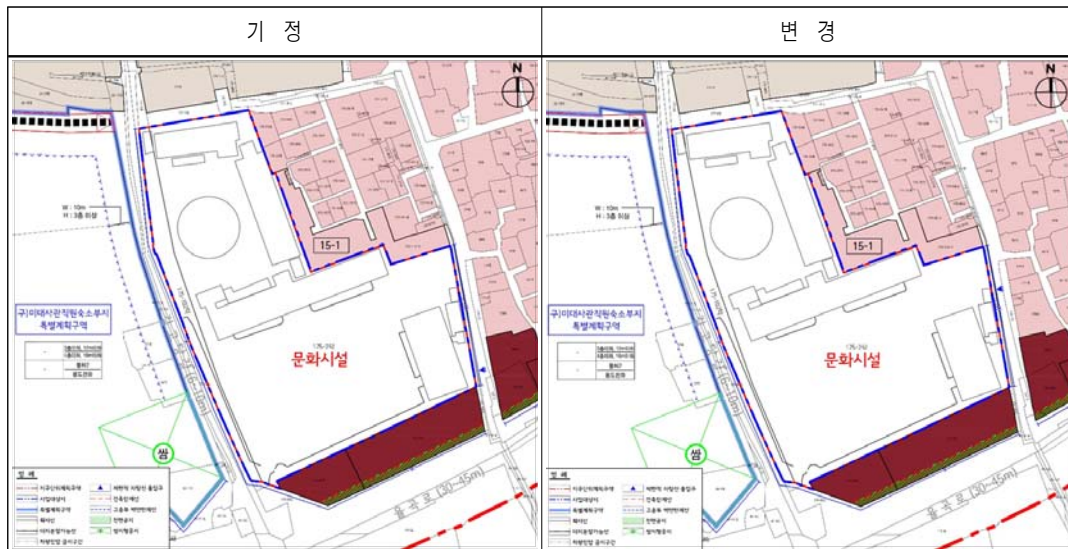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도(변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도면 : 불임참조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구고시 제2018-8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중구고시 제2016-100(2016.11.10.)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16-115호(2016.12. 8.)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8일

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 다. 대지면적 : 379.4㎡(변경없음)
- 라. 사업의 규모와 내용(변경없음)
-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내용 :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인가일로부터 2019년 12월
- 사.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물건의 종류 : 붙임(토지·물건·영업권조서 등)
- 아. 게재방법 : 시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자. 관계서류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
- ※ 변경사항 : 준공예정일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명 성	주 소	종 류	명 성	주 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대지	160.8	160.8	이병*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	근저당	신현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9	대지	28	28	김창*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				

국 광 유 지 조 서(토지)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종류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8	대	18.2	18.2	국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10	대	153.8	153.8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21	대	18.6	18.6	국					

국 광 유 지 조 서(건물)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10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29.9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공로 17(예관동)			
			1층	71.26					
			2층	60.76					
			3층	41.64					

건물조서

● 사업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100.71	이병*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신당동)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1층	86.05					
			2층	86.53					
			3층	72.25					
			4층	72.25					
			옥탑층	9.36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8,-9	시멘트 블록조	1층	48.6	김창*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신당동)			
			2층	48.6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21	시멘트 블록조	1층	18.9	이원*	서울시 중구 퇴계로84길 24-10(신당동)			
			2층	18.9					

영 업 권 조 서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영업의 종 류	상 호 명	수량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종 류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의류임가공	미주패션	1식	이승*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94가길 20, 2**동 8**호 (상계동)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기타사업 지원서비스업	한고(GO)	1식	천덕*	서울시 중구 다산로36가길 23 (신당동, 신영빌딩)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실내장식	디자인 시우	1식	김종*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1**동 8**호 (하왕십리동,센트라스)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마포구고시 제2018-16호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1-302호(1991.10.1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마포구 고시 제 2013-2호(2013.1.3.)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마포구 고시 제 2013-15호(2013.1.31.)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마포구 고시 제2015-115호(2015.7.2.) 및 마포구 고시 제2016-86호(2016.6.30.)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포구 토정로 56 일대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8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토정로 56외 1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 2) 명칭 : 우·오수암거 이설공사(서울복합 1·2호기 건설관련)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1) 면적 : 4,637.1㎡(변경없음)
- 2) 규모

내 용 (규 격)	연장(m)	비 고
신설 PC 박스(3.0mx2.5m)	354	
신설 PC 박스(1.5mx1.5mx1련)	44	
신설 유리섬유 복합관(D1.65m)	25	
기존 하수관 보수(1.5×1.5m)	123	
기존 하수관 폐지(2.5mx2.5m)	258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1) 성명(상호)
 - 당초 :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정창길
 - 변경 :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장성익
- 2)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 초	변 경	사 유
2013.2.1~2017.12.31.	2013.2.1~2018.11.30.	서울복합 1,2호기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동작구고시 제2018-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299호(1963.4.26)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34호(2011.6.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52호(2015.7.16.)로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64호(2015.9.3.)로 변경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94호(2016.12.29.)로 변경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7-70호(2017.8.31.)로 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비둘기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비둘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규모

- 1) 위 치 : 동작구 상도1동 558
- 2) 면 적 : 2,114.7㎡
- 3) 내 용 : 건물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조서(변경) : 따로붙임
-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 사.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상도1동 558	주택	블럭조 세멘기와	82㎡	8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 등길 14-3 (상도1동)	박기섭			기준 무허가
		보일러실	블럭조	11.3㎡	11.3㎡					
		보일러실	판넬조	6.7㎡	6.7㎡					
		장독대	세멘트 콘크리트	7.6㎡	7.6㎡					
		펜스	철재 격자형 12mx1.5m	1식	1식					
		대문	철재 1,8mx1.9m	-	1식					
		담장	블럭조	59.3㎡	59.3㎡					
		계단	세멘콘크리트 3.3mx2.2m	1식	1식					
		단풍나무	30년생 흉고경 30φx8m	-	1주					
		사철나무	30년생 수관 3mφx2m	-	2주					
		편백나무	30년생 흉고경 20φx2m	-	2주					
		모과나무	20년생 흉고경 10φx3m	-	1주					
		감나무	5년생 흉고경 5φx 2m	-	1주					
		당두충	17년생 근경20φx 3m	-	1주					
		목단	17년생 1.5m	-	1주					
		전기계량기	가정용	-	1기					
		수도계량기	가정용	-	1기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상도1동 558	건물1층	목조판넬지붕	71.2㎡	7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4길6 (상도1동)	신규철				무허가
		정독대	시멘트 포장	26.6㎡	26.6㎡						
		보일러실	목조판넬지붕	0.9㎡	0.9㎡						
		건물1층	조적조 아스팔트싱글지붕	83.1㎡	83.1㎡						
		건물2층	조적조 및 블럭조 아스팔트싱글지붕	83.1㎡	83.1㎡						
		건물1층	조적조 및 블럭조 아스팔트싱글지붕	54.4㎡	54.4㎡						
		가건물(주방)	블럭조	10.7㎡	10.7㎡						
		대문	스텐인레스 1.1mx2m	-	1식						
		문주	시멘트벽돌 0.4mx0.4mx2m	-	2식						
		펜스	방부목 1.34mx42.5m	57㎡	57㎡						
		축대1	석재 2.5mx4m	-	1식						
		축대2	석재 2.5mx22m	-	1식						
		축대3	석재 2.0mx12m	-	1식						
		담장1	블럭조 1.2mx12m	-	1식						
		담장2	블럭조 1.5mx20m	-	1식						
		마당(바닥포장)	보도블록	-	187㎡						
		덩굴지대	철파이프 50φx2.4m	-	21개						
		산초나무1	60년생 홍고경 50φx10m	-	1주						
		감나무1	60년생 홍고경 30φx10m	-	1주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간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상도1동 558	감나무2	60년생 흉고경 25φx10m	-	1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4길6 (상도1동)	신규철				무허가
		감나무3	60년생 흉고경 25φx11m	-	1주						
		밤나무	60년생 흉고경 18φx8m	-	1주						
		신초나무2	60년생 흉고경 40φx8m	-	1주						
		감나무4	60년생 흉고경 30φx11m	-	1주						
		신초나무3	15년생 흉고경 20φx10m	-	1주						
		등나무	30년생 수관면적 33㎡	-	2주						
		사철나무	60년생 수관 0.5mφx3m	-	2주						
		가스계량기	가정용	2기	2기						
		전기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3	상도1동 558	수도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2-1 (상도1동)	대한 예수장로회 서울남노회				
		창고	적면외조 슬라브지붕	6.7㎡	6.7㎡						

이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상도1동 558	펜스	능형망철재 H1.5m 각 L14.37m, L20.6m	20.5m	52.5㎡	동작구 감남초등4길 14-1(상도1동)	한상희				
		대문	철재 2.3m×1.8m	1식	1식						
		문주	0.4m×0.5m× 2.1m	-	2식						
		담장	시멘트블록 2.65m×1.8m	-	4.8㎡						
		마당	보도블록	-	13㎡						
		전기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수도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모과나무	근경15φx수고 2m	-	1주						
		살구나무	홍고경 20φx수고2m	-	1주						
		라일락	근경18φx수고 1.8m	-	1주						
		장미	수고1.5m 10년생	-	1주						
		철쭉	수고1.5m 11년생	-	10주						
		목단	50년생	-	1주						
		감나무	홍고경 35φx수고2m 50년생	-	1주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역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주택	벽돌조 및 블럭조 합석지붕	203.3㎡	203.3㎡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 (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신현승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중대로 923, 106동 1505호 (신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신현기	4/54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호(상도1동 배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종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전기계량기	가정용	-	3기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베탈디)	신현승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서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중대로 923, 106동	신현기	4/54			
						1505호(신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호(상도1동 배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서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중	4/54			
						경기도 이천시 백서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가스계량기	가정용	-	3기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6/54	신현승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6/54	천정숙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4/54	신현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중대로 923, 106동 1505호(산이리대 주파크빌아파트)	4/54	신현기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4/54	신현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호(상도1동 백남빌라)	4/54	신현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재11길4-1, 1층102호(신림동)	4/54	신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2호(상도1동)	4/54	신현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4/54	천태선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4/54	신현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4/54	신현중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4/54	신현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1/54	신현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1/54	신현지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계단	철재 1mx3m	-	1식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신현승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서면 원적로801번길206	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23, 106동	신현기	4/54				
						1505호(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6 B01호(상도1동 백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6, 지층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서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종	4/54				
						경기도 이천시 백서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역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사철나무	수관 1.2m ∅	-	1주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 (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신현승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중대로 923, 106동	신현기	4/54				
						1505호 (산리대주파크빌아파트)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호 (상도1동 백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 (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 (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중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상도1동 558	주택	블럭조 기외지붕	69.8㎡	69.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남초등학교길 14-3 (상도1동)	박남순				기준 무허가 (보상완료)
		가건물(주방)	블럭조	5㎡	5㎡						
		화장실	블럭조	3.4㎡	3.4㎡						
		대문	철재 0.9m×1.8m	1식	1식						
		담장	블럭조 1.5m×18.9m	1식	1식						
		전기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수도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수전	수도꼭지	1기	1기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8-10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공시 제2017-41(2017.5.25.)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구 신당동 300-6번지 일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총무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0-6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사업
- 명 칭 :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7층, 연면적 6,650.26㎡
- 대지면적 : 1,226.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년 3월

바.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및 신당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그 소유권과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조서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총무과 (☎ 02-3396-4504)

© 사업명 :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당동 300-6	대	427.0	427.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2	신당동 300-11	대	442.0	442.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	신당동 300-17	대	3.0	3.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4	신당동 300-18	대	13.0	13.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5	신당동 300-27	대	3.0	3.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6	신당동 299-7	대	175.0	175.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7	신당동 299-11	대	36.0	36.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8	신당동 299-14	대	73.0	73.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9	신당동 299-17	대	32.0	32.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10	신당동 299-21	대	22.0	22.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건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당동 300-6	철근 콘크리트	1층	289.62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2층	210.17						
			3층	210.17						
			4층	210.17						
			5층	210.17						

사업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주변위치도



2. 주변현황



◆ 광진구공고 제2018-1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2-89호(1972. 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0-5호(2010. 3.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작성고시 되고 광진구고시 제2014-30호(2014. 3.20.) 및 광진구고시 제2015-27호(2015. 3.12.) 광진구고시 제2015-123호(2015.10.29.) 광진구고시 제2016-131호(2016.12.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된 「군자동 35-1~23번지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를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5-1~2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군자동 35-1~2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폭 5~6m, 연장 7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기간 : 2010. 3. 25. ~ 2017. 5. 25.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붙임 : 공사완료 위치도



◆ 광진구공고 제2018-143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2011.04.07.)로 결정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동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광진구청장

가. 목 적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나. 열람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18-1호 일대	306,559	1996.6.27 (서고시제 1996-178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다.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라.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450-7692)
-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북구공고 제2018-169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2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428호(2008.11.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2호(2013.12.19)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2월 8일
 강 북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번동 산19번지 외 1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8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 라. 규 모 : 토지보상 4,844㎡
-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차. 열람장소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8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지 분	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 리 의 내 용	
1	2필지		36,249	4,844								
	번동 산19	임야	33,983	4,150			성북구 하월곡동 23-1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2	미아동 산34-2	임야	2,266	694	8분의1		강남구 삼성동 22상아파트 5동1006호	김창일				
					8분의1		강남구 삼성동 22상아파트 5동1006호	신영희				
					8분의1		강남구 삼성동 22상아파트 5동1006호	김문석				
					8분의1		강남구 삼성동 22상아파트 5동1006호	김기석				
					8분의1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95-25	김성화				
					8분의1		용산구 이태원동 258-63	김인정				
					8분의1		미합중국 80303 콜로라도주 볼더시 맥킨리드라이트 4704	김성숙				
					8분의1		강남구 압구정동 456현대아파트 73-505	김영철				

◆도봉구공고 제2018-18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7.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420호(1992.12.21.), 제2018-23호(2018.1.18.)로 변경 결정된 아래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8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칭 : 역사 출입구 신설 및 보행통로 조성

다. 사업규모 : 역사 출입구 신설(53m²) 및 보행통로 조성(44m) 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도봉구청 건축과, 신경제사업과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건축과(☎2091-3675), 신경제사업과(☎2091-48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공고 제2018-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7.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호(2018.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아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같음 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2091-4055)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8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도봉동 4-8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보행로 및 마을버스 회차로 조성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보행로 정비 및 마을버스 회차로 조성 : 폭11m, 길이1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바. 열람공고 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지장물건의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보행로 및 마을버스 회차로 조성

가. 도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도봉구 도봉동 11-8	답	52	15	민차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2-100					
2	도봉구 도봉동 17-20	답	256	229	도봉구 양광석	강남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14동211호	2466/3788 1322/3788				
3	도봉구 도봉동 4-43	전	314	277	도봉구						
4	도봉구 도봉동 4-47	전	34	30	서울시						
합 계			656	551							

◆ 도봉구공고 제2018-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22호(2017.01.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봉구 쌍문동 산 264번지 일대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264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면 적 : 4,440㎡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문서 참조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아.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4/도봉구 마들길 656번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쌍문동 신264	임야	4,440	4,440	신규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86-38	1/2				
					이지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518동 204호	1/2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지 분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쌍문동 신264	건물	슬레이트,블럭	5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86-3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518동 204호		신규철 이지열				
		화장실 창고	슬레이트,블럭	5.85㎡							
		수도시설	1.2*1.2	1개소							
		장독대	1.2*2	1개소							

◆ 노원구공고 제2018-1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08.25.)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44-3번지 수락산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44-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 3) 사업내용: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22,000㎡

라.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66)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 명세: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계동 산44-3	임야	임야	93,077	22,000	이순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국정로 313, 61동 1102호 (안국정동, 한양아파트)				해당없음	

◆영등포구공고 제2018-1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고시 제561호('85.12.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고시 제19호('86.01.16.)로 지적고시된 『도림로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신길동 355-698 ~ 355-70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도림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30→35m, 연장 70m(편측)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영등포구청 도로과에 관계서류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 있으실 때에는 열람공고기간 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3)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사업의 명칭 : 도림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신길동 355-698	대	60	60	조연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9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한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30 (신길동지점)	
2	신길동 355-699	잡	54	54	임흥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57, 206동804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신길서지점)	
3	신길동 355-700	잡	56	56	임흥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57, 206동804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신길서지점)	
4	신길동 355-701	도	18	18	허창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11				
					허정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 23-106				
					손일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아파트 씨-2206				
					손일혁	미합중국 매릴랜드주 노스포맥 쿼트우드퍼 14405				
					손승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 22-1105				
					고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26동 805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고민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26동 805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5	신길동 355-668	잡	55	55	오상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03-502				
6	신길동 355-669	잡	51	51	오상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03-502				
7	신길동 355-702	대	67	67	성락침례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07 (신길동)				
8	신길동 355-703	잡	10	10	김이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301-43				
					윤희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317-20				
					이경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29-165				
					홍내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4-76				

□ 위치도



◆ 영등포구공고 제2018-2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고시 제768호('64.0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영고시 제2016-79호('16.09.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고시 제2016-97호('16.11.0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7-15호('17.2.2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변경사항(소유자 및 물건추가)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림동 187-17 ~ 200-20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6-11 ~ 187-3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115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영등포구청 도로과에 관계서류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 있으실 때에는 열람공고기간 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1)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6-11 ~ 187-3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87-17	당초 변경	대	7	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 경 없 음					
2	도림동 187-108	당초 변경	대	3	3	박순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5-6				
			대	3	3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도림동 187-109	당초 변경	대	46	46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 경 없 음					
4	도림동 187-110	당초 변경	대	2	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 경 없 음					
5	도림동 187-107	당초 변경	대	47	4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 경 없 음					
6	도림동 187-66	당초 변경	대	43	43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 경 없 음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과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7	도림동 200-29	당초	대	60	60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경					변 경 없 음				
8	도림동 200-30	당초	대	19	1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경					변 경 없 음				
9	도림동 200-34	당초	대	87	87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변경	대	87	8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10	도림동 200-36	당초	대	91	91	이선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탐마을 114-503				
						이승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60 105동 204호				
						이석희	경기도 광명시 하인동 702 고층주공아파트 507-906				
						이성호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08동 1602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경	대	91	91	국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11	도림동 187-104	물건추가	대	2	2	국 (기획재정부)					
12	도림동 187-106	물건추가	도로	11	11	국 (기획재정부)					
13	도림동 200-25	물건추가	대	1	1	국 (기획재정부)					
14	도림동 200-26	물건추가	대	26	26	국 (기획재정부)					
15	도림동 200-31	물건추가	대	42	42	국 (기획재정부)					
16	도림동 200-32	물건추가	대	51	51	국 (기획재정부)					
17	도림동 200-33	물건추가	대	68	68	국 (기획재정부)					
18	도림동 200-35	물건추가	대	58	58	국 (기획재정부)					
19	도림동 200-27	물건추가	대	6	6	국 (기획재정부)					

별첨 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6-11 ~ 187-3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권리종류	성명	주 소	
1	도림동 200-13	당초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22	김일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15					
		변경					변경 없음					
2	도림동 200-14	당초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영등포구					
			창고		1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대문			1식							
		변경					변경 없음					
3	도림동 200-15	당초	주택 (1층)	목조	62		영등포구					
			부엌		1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창고			1식							
		대문			1식							
		변경					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4	도림동 200-16	당초	주택 (1층)	목조	19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창고		1식						
			화장실		1식						
			수목		1식						
5	도림동 200-18	변경	주택 (1층)	목조	1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창고		1식						
			화장실		1식						
			수목		1식						
6	도림동 200-20	당초	주택 (1층)	목조	39	이호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19, 206동 1003호(백석동, 백송마을)				
			주택 (1층)	목조	3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주택 (1층)	목조	59	김진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2-204				
			주택 (1층)	세멘조	23	이상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 사당우성아파트 205-305				
6	도림동 200-20	변경	대문		1식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주택 (1층)	목조	59						
			주택 (1층)	세멘조	23						
			대문		1식						

■ 위 치 도



◆ 강남구공고 제2018-2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77.7.9) 및 서울시고시 제2008-451호(2008.12.18.)로 도시계획(도곡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136호(2017.4.20.)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도곡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72호(2017.5.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곡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주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423-6243)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강남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도곡동 산30번지 등 2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도곡근린공원 조성
-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2,578㎡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 강남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3423-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	강남구 도곡동 산30	임야	9,793	1,858	풍양조씨 부사공파 종중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0-9			
2	강남구 도곡동 산35-1	임야	4,000	720	한 일 자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800 금호동대우아파트 107-1403	조흥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남대문지점)	근저당권
					한 일 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18-307	신한 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남대문지점)	근저당권
					한 일 홍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에이펙스 루이브룩드라이브 204			
					한 일 봉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1 한신서래아파트 4-1002			
					이 명 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64 현대아파트 61-1006			
					한 수 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12 효성올림픽카운티 2-201			
					한 종 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64 현대아파트 61-1006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투우엔지니어링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51	서울시계 내 한강 (여의도한강공원)	선박 2척 (기선1,부선1)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토질조사)	'18.02.01.~ '18.02.28.	'18. 01.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27척 (기선 10척, 부선 17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18.02.01. ~ '18.02.28.	'18. 01.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번지	선박 4척 (기선1, 부선3)	정박대기	'18.02.01. ~ '18.02.28.	'18. 01.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시 동구 송현동 129 산업유통센터 2/327	서울시계내 한강(이촌,잠원)	선박 2척 (기선1, 부선1)	세브호 구조개선공사, 넙툰호 상부공사보조	'18.02.01. ~ '18.02.28.	'18. 01.31.

사업소공고

◆ 강서소방서공고 제2018-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강 서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등급 및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강서2018-1호 (2018.1.29.)	미성엠프로 주식회사 (305-81-10789)	최용진 (56.01.13) 서요원 (46.11.17) 허은방 (49.03.08) 안문영 (46.04.0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75 (등촌동, 미성빌딩)	02) 3660-68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3664-590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50-1~681번지
 - 면 적 : 6,38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제방정비 및 공원화사업
 - 내 역 :
 - 제방둑마루 포장 및 체력단련시설 등
5. 점용기간 : <당초> 2012.03.21.~2017.03.20.
 <변경> 2017.03.21.~2022.03.2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번지 일원
 - 면 적 : 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시비 설치

- 내 역 :

○ 시비 설치 1개소(1.62m×0.3m)

5. 점용기간 : <당초> 2006.02.22.~2011.02.21.

<변경> 2011.02.22.~2021.02.21.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